

지속가능한 복지체제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스웨덴 복지제도의 변화와 도전”

- 일시: 2011년 3월 30일(수), 15:00~18:00
- 장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주제 발표 : 스웨덴 복지제도의 변화와 도전(최연혁, 쇠데른턴대학)
사 회 : 김용하(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토 론 : 석재은(한림대 사회복지학과)
 옥동석(인천대 무역학과)
 이상이(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준영(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우경임(동아일보)
 노홍인(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강신욱(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
 여유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
 이태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
 유근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

스웨덴 복지제도의 변화와 도전

- 지속적 복지제도의 방향성에 관한 논의 -

최연혁(스웨덴 쇠데른턴대학)

제1절 들어가는 글

이 연구는 스웨덴의 사회복지모델의 형성 및 변화 과정과 최근 진행되고 있는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적 복지제도의 구축과 이론적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스웨덴의 1930-40년대 초기 복지국가모형의 개발, 1950-1970년대까지의 복지제도의 완성, 1980년대 이후 1990년대까지의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응과정, 그리고 최근 2000년대 이후 복지제도의 개혁과정을 살펴보고, 스웨덴 복지제도의 이론적 틀을 제공한 정치사상적 배경, 복지제도의 틀을 형성하는데 미친 제 영향 틀, 그리고 정치적 배경 및 각 정당 들의 시각과 1976년 및 1991년 경험한 정권변화에 따른 정책변화, 그리고 국민들의 복지제도에 관한 시각과 정당정책에 대한 평가 등을 비교해 보면서 스웨덴의 복지제도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스웨덴의 복지제도 미래 방향성에 관한 전반적 검토와 어떠한 변화의 압력과 변수들이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다른 북유럽 국가와의 연관성과 함께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이 연구는 주로 1차 문헌자료와 다양한 통계자료, 그리고 정부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다. 스웨덴의 복지정책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국가정책 차원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폭넓고 다양한 문헌들이 산재해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취합해 분석하고, 이 글의 목적에 부합된 내용을 중심으로 스웨덴의 복지제도의 다양한 변화과정과 정당들의 인식, 그리고 국민들의 복지제도에 관한 인식 등을 다양한 통계자료 및 설문조사 연구결과물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한다.

최근의 논의는 북유럽 각국의 복지에 대한 통계자료와 정부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분석해 비교하고, 에스핑-안데르센의 북유럽모델 (The Scandinavian Model 혹은 The Nordic Model) 이라고 정의되고 있는 복지모델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민적 시각의 변화, 그리고 노동사회와 저출산, 그리고 고실업률의 상황 속에서 어떤 정책적 선택이 가능할지에 대한 논의를 위해 다양한 국제저널, 국내저널 및 단행출판물을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스웨덴 각 정당들의 복지제도 입안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한 미래 복지제도에 대한 시각, 해결책, 접근법을 취합해 논의를 진행할 계획에 있다.

제3절 스웨덴 복지제도의 특징과 변화

스웨덴 복지제도의 구축은 사민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사민당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사회공학 (Social engineering)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Childs 1936, 1980; Clement and Mahon 1994; Einhorn and Logue 1989; Karvonen and Sundberg 1991; Shalev 1983; Lane 1991:1-8). 스웨덴 복지제도의 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민당의 정치적 기반과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스웨덴 복지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의 집 (Folkhemmet; The People’s Home)” 개념을 중심으로 복지제도의 사회공학적 측면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국민의 집 논의와 스웨덴 복지제도의 발전과 변화

국민의 집 (The Peoples’ Home)의 표현은 1928년 사회민주당 당 회의에서 밝힌 한손(Per-Albin Hansson)에 의해 최초로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 스웨덴 복지제도의 대표적 개념이 되었다. 국가는 곧 국민의 집과 같은 역할을 통해 노동자를 포함한 포괄적 사회적 약자를 국가가 보호해 가정의 다양한 삶의 조건과 관계없이 일정수준의 보장된 삶의 질과 평등적 사회적 권리가 있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즉 스웨덴의 국민의 집 논의에서 제시되고 있는 평등적 개념과 보편적 복지를 통한 인간 삶의 구현은 존 롤스의 평등론과 유사하다 (Rawls 1971; Freeman 2007). 이 같은 평등적 개념에 1930년대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국민의 집에 대한 논의는 스웨덴 사민당의 사상적 기반에서 출발을 했지만 사회복지제도의 구상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스웨덴 복지제도 혹은 정치경제이념으로 자리 잡아왔다 (Esping-Andersen 1992).

1920년대 이전에도 이미 국민연금제(1913)와 8시간 노동제(1919) 등이 도입되기도 했으나 1932년 단독정권을 수립한 사민당이 대공황 시기 개인적 파산과 노동시장에서의 퇴출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공공부조의 일환으로 사회정책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높은 실업률 해결을 위해 케인즈의 유효수요 창출의 원칙에 입각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공공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중요한 경제정책수단이 되었으며, 대공황기에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극빈생활을 하던 노동자들의 피폐한 삶을 국가가 가정처럼 보호해 주고 따스한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국민의 집은 매우 매력적인 대안이 되었다 (Karlsson, 2001).

그러나 국민의 집에 기초한 복지제도의 시행초기인 1940년대까지만 해도 노동자의 실업문제, 산업재해, 임산부 보호 등 노동시장에서 초래된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산업노동자, 특히 여성의 후생복지와 근로조건 개선에 초점을 맞춘 선택적 복지 차원이었다면, 1950년대 들어서 부터는 점차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편적 복지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웨덴 국민의 집 건설을 통한 복지제도의 황금기는 1960년대와 70년대라고 할 수 있다. 1940년대와 50년대를 거치면서 아동수당지급(1947), 추가연금실시(1959) 등 사회그늘과 경제사각지대의 가정 및 연금생활자의 구제에 그쳤다면, 1960년대와 70년대에 이르러서는 마샬(T. H. Marshall, 1950 & 1964)의 사회적 권리와 민주주의 완성이라는 주장에 부합되는 에르란데르 수상의 ‘만인의, 만인에 의한, 만인을 위한 강한 사회 (of all, by all and for all)’ 구호아래 시작된 주택100만호 건설은 따뜻한 물, 수세식 화장실, 현대적 부엌을 갖춘 아파트는 Volvo 자동차와 함께 1960년대의 스웨덴

보통 국민의 일반적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사회의 역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Erixon 1998).

사민당의 집권이 1932년 이후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60년대 사민당의 정책은 곧 평등을 통한 민주주의 완성, 경제발전과 부의 분배를 통한 고른 삶의 질의 제공, 완전고용을 위한 적극적 노동정책, 그리고 기회의 균등을 위해 필수적인 무상 교육정책 등 사회경제(Socio-economic) 및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모델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969년 에르란테르의 뒤를 이은 팔메 수상은 연대와 평등 (Solidarity and equality)을 근간으로 한 국민의 집 건설을 통해 소외되었던 여성의 적극적 보상과 사회주류로서의 편입을 위해 가정으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하는 등 출산유급휴가제도입(1972), 국민치과보험제(1973), 5주휴가제(1973), 부모보험제(1974) 등 적극적인 가정정책과 여성정책,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괄적 복지제도가 완성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은 세계 최상위 그룹으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세계 최고의 세율을 바탕으로 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는 노르딕모델 혹은 스웨덴 모델의 전형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Esping-Andersen 1991 & 1992). 사민당의 장기집권기간인 1932년에서 76년까지 44년 동안 스웨덴 복지모델의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76년 집권한 팔딘(Thorbjörn Fälldin) 우익정권도 사회복지제도의 지속적 유지와 완전고용을 위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집이라는 사민당 프로젝트는 국가프로젝트, 혹은 국가브랜드로 격상되었다 (Therborn 1987).

〈표 1〉 국민의 집 구축과정과 스웨덴 복지정책의 변화

시기	주요 정책	특징
1910 -20년대	· 국민연금제(Folkpension, 1913) · 8시간 근무제 (1919)	· 시민당의 제1당 등극 이후 사회정책의 개발. 특히 1920년대 한손의 국민의 집 개념도입 (1928) · 정의, 시민정신, 배려정신, 연대의식의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
1930년대	· 실업보험지원정책 (1934) · 임신부보호정책(1937) · 2주일 법정휴가제(1938)	· 한손의 선거전략과 사회복지 정책으로서의 선택, 실업자, 임신부, 노동자의 후생복지에 초점
1940년대	· 아동수당지급(1947)	· 2차 대전 전후의 시민당 주택, 보건, 가족정책을 포함한 포괄적 복지정책의 전략
1950년대	· 3주휴가제(1951) · 추가국민연금제(1959, ATP)	· 에르란데르 수상의 강한 사회 (Strong Society)를 통한 국민의 집 건설로 대체됨
1960 -70년대	· 4주휴가제 (1963) · 9년 의무교육제(1966) · 아동가정 주택보조비(1968) · 100만호 주택건설 (1965-75) · 주당40시간-주5일 근무제 (1971) · 출산유급 휴가제 (1972) · 국민차과 보험제 (1973) · 5주휴가법(1973) · 부모보험제(1974, Parental Insurance)	· 팔메의 등장과 연대와 평등에 기초한 국민의 집 건설추진 ·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증대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 ·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괄적, 보편적 복지제도의 완성 · 고세금-고혜택을 바탕으로 한 스웨덴 모델(The Swedish Model)을 바탕으로 함.
1980 -90년대	· 녹색 및 환경정책 · 우체국민영화 · 통신민영화 · 의료경쟁제 도입 · 국제연대를 위한 국민의 집 대의원조정책	· 국가재정적자의 문제와 복지병 혹은 모랄헤저드 문제의 등장 · 녹색국민의 집 (폐쇄) · 대내적으로는 일시적 국가역할의 후퇴 · 대외적으로는 국제적 책임연대를 통한 제3세계의 국민의 집 건설 원조
2000년대 이후	· 다문화정책 · 포괄정당(Catch-all-party)화의 복지경쟁 · 우익정권의 당근과 채찍정책 · 의료보건 민영화 · 약국민영화 · 제3의 길 (The Third Way)에 따른 복지제도의 개조	· 국가역할의 축소 및 구조조정 · 민영화를 통한 경쟁도입 · 고착화된 소외계급의 사회적 책임과 생산참여강조 · 2006년, 2010년 선거에서 패한 시민당의 당면과제: 2000년대의 국민의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 무지개 집의 개념도입 (다문화시대의 사회적 사회계급의 등장과 소외)

자료: 저자. 다양한 자료에서 취합된 스웨덴 복지정치사의 정리.

그러나 1960-70년대의 복지제도는 너무도 짧은 전성기를 누리게 된다. 70년대 들어 중동전쟁과 이란의 혁명으로 인해 두 번에 걸쳐 촉발된 유가파동 (1973년 1차, 1979년 2차)과 80년대 중반의 자본자유화를 통한 버블경제의 여파로 스웨덴의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 물가의 폭등, 그리고 기업의 파산 등으로 이어졌다.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1982년 16%의 스웨덴 화폐 평가 절하를 단행했으나 사회보장제도의 확장으로 인한 기업의 복지제도의 부담은 축소되지 않았다. 1950-60년대의 세계경제 성장과 스웨덴 경제의 팽창에 따라 노동시장의 안정과 완전고용을 바탕으로 한 고세율-고혜택에 기반을 둔 사회복지제도의 과중한 비용부담이 경제에 부담이 되어 재정적자와 기업의 파산, 산업노동자의 대규모 실업 등의 확대로 이어지면서 시민당의 선거패배 (1991)를 초래했다. 결과적으로 복지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고 우익정권의 등장에 따른 정치적

상황의 변화, 세계경제 자유화에 따른 스웨덴 경제의 영향 등에 따라 스웨덴 복지모델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Carlsson, 1988: 70쪽 Benner 1997).

1994년 정권 탈환에 성공한 사민당의 가장 큰 부담은 무엇보다도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공공부문의 대량해고, 통폐합 등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고수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는 점으로 비춰볼 때, 스웨덴의 복지제도가 외부충격과 내부의 변화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잘 대변해 준다고 하겠다 (Persson 1997; Carlsson 2003 172-178; Feldt 1991: 2장 Glyn 2003). 즉 스웨덴의 경제가 무역 및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해 있기 때문에 국제경제의 변화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세계화에 따른 자본의 자유화, 그리고 초자본주의의 폐해에 따른 자본시장의 몰락 등 외부 충격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와 함께 병가율의 증가, 사회보조금의 지나친 의존 및 남용, 장기휴직을 통한 조기퇴직의 증가 등 국민들의 모럴헤저드도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그 여파로 산업생산성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에 바탕을 둔 세금운용과 사회복지기금의 확보라는 사회경제모델이 국가의 대량적자를 부채질하는 형국으로 진행되면서 스웨덴 모델의 수명이 불가피해진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복지국가 모럴 헤저드는 국가세금의 비효율적 사용도 문제이지만 국민의 복지에 대한 의존성이 지나치게 되면 결국 민주사회의 관용, 이해심, 시민정신 등도 함께 저하되어 심각한 민주주의 불신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모럴헤저드와 경제와의 관계는 Hall & Hartman (2009), Khan & Rehnberg (2009), Skogman Thoursie (2004), Johansson & Palme (2005), 그리고 모럴헤저드와 민주주의의 위기에 관해 서는 Rothstein (2001, 2005) 등을 참조.

실업수당과 병가수당이 병가일수 증가율과 복지의존도를 연구한 라손(Laura Larsson)은 실업수당이 끝나는 시기에 다시 병가일수가 높아져 실업수당과 병가수당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으며, 복지의존의 함정에 한번 빠지면 그만큼 빠져 나오기가 쉽지 않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장기실업자의 굴레에 빠지게 된다는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Larsson 2002).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무역질서와 자본자유화에 따른 국제경제의 환경변화와 대내적 도전요소는 1980년대까지 확장일로에 있었던 스웨덴의 복지제도가 1990년대를 거치면서 현실적으로 안정적 재원확보를 통한 지속적 복지제도의 유지에 대한 회의와 함께 중장기적 현실화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었다 (Glyn 2003). 1996년 보건의료개혁을 통한 의사 및 간호사, 간호보조사의 대대적 구조조정, 학교통폐합을 통한 교육지출비 축소, 지방공공조직 축소 및 지방교부금의 삭감, 그리고 1999년 연금개혁을 통한 국가부담금의 축소 등 스웨덴 복지의 중장기적 틀을 새롭게 구축하면서 국가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고, 개인의 책임성 강조, 복지기금의 기여제 등을 도입하면서 복지소비자의 본인부담금의 증가와 복지서비스 공급자간의 경쟁적 요소를 도입하여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추진해 왔다 (Persson 1997; Karen 2001; Bonoli and Palier 2001).

2000년대 사민당의 노동시장정책의 실패에 따른 장기실업자의 양산과 기초의료기관과 대형병원체제로 이루어진 보건의료제의 비효율성 즉, 수술대기 시간의 확대, 의사일인당 환자수 감소 스웨덴 의료기관의 비효율성의 문제점은 Renstig, et al (2003)의 글에 잘 나타나 있으며 특히 스웨덴이 세계비교연구에서 나타난 의사일인당 환자진료수에 있어 일본(8421명), 영국 (3143명), 미국(2192명), 덴마크(2069명), 독일(1857명), 노르웨이(1583명), 핀란드(1400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903명을 기록하고 있고, 이는 OECD 평균인 2167명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Renstig 등은 의료의 구조개혁없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2006-2010년 기간동안 집권한 라인펠트 (Fredrik Reinfeldt) 정권의 처방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란스탕이 운영하는 대형병원 위주로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고 병원의 경쟁체제 도입과 민영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시도하였다. 2010년 선거에서 재집권한 우익정권 하에서 앞으로 병원개혁이 더욱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등의 복지제도 효율성의 문제점과 함께,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전개된 국제경제의 쓰나미 현상은 스웨덴경제와 복지제도 유지에 또 다른 위기로 다가오면서, 2006년정권교체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단서가 되었고 2000년대의 도전 하에서 스웨덴 국민의 집을 어떻게 유지보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 (Fries 2010; Klitgaard 2007)의 기폭제가 되었으며 제3의 길에 대한 유의성 논쟁, 즉 신자유주의적 경쟁 요소와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제도의 효율화, 개인의 적극적 역할과 책임의 증대에 관심이 증폭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의 또 다른 특징으로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모델이 국제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불요불급한 국가의 개입은 위기에 처한 금융부문 및 기타 산업의 구조개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삶이 사회안정망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가 경제적 위기상황을 쉽게 극복하고,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으며, 국민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사회위기를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는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다 (Huber and Stehpn 2001; Hall 2009; Derek 2010).

이 같은 북유럽모델, 특히 스웨덴 모델의 강한 위기저항력은 우익정권 하에서도 보편적 복지제도의 큰 틀은 수월하지 않고 누수나 비효율적인 부분만 보수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복지제도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복지제도의 비효율성 즉, 모럴 헤저드를 제거하고 건강한 복지, 개인의 책임과 적극적 기여를 전제로 한 복지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스웨덴 국민의 집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도 현재진행형인 셈이며, 앞으로 고령화, 저출산의 내적 문제와 세계화에 따른 외적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복지제도의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를 놓고 선거를 통한 국민적 동의절차과정을 거쳐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Benner & Vad 2000).

지금까지 스웨덴 복지제도의 기본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민의 집을 중심으로 복지제도의 내용과 시대적 요구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다양한 복지프로그램과 사회보장의 내용을 담고 있는 스웨덴 복지제도가 30년대 이후 최근까지 발전되고 변화되어 오면서 나타난 특징적 요소는 무엇일까? 즉 흔히 말하는 스웨덴모델의 특징은 무엇이고, 어떤 특정 요소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는 스웨덴 모델이 정치 및 경제, 사회적 상황과 구조가 상이한 국가들에 어떤 함의의 뜻이 있는지 검토해 보는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음의 장에서는 스웨덴 복지제도를 구성하는 몇 가지 특징적 요소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스웨덴 복지제도의 특징

스웨덴의 복지제도는 단순히 사회정책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정치경제모델에 그치지 않고 교육, 사회, 경제, 주택, 지방분권을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노조와 사민당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한 정치 모델 등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를 몇 가지 특징으로 모아 정리해 보기로 한다.

가. 고세율-고복지의 보편적 복지국가

스웨덴의 복지제도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보편적 복지에 바탕을 둔다. 이는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국가체제 (Welfare State Regime) 모델인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중심적인 앵글로-색슨 모델 (Anglo-saxon Model), 가족책임을 중시하는 유럽대륙모델(Continental Model) 그리고 보편복지의 시민주의적 모델 (Social Democratic Model) 중 하나를 차지한다(Esping-Andersen 1990; Bergqvist et al 1999:4쪽 Rothstein 1996, 2001). 이 복지제도의 특징은 전국민을 사회보장의 대상으로 복지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재원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보편적 복지의 기본적 원리는 사회적 격차를 세금을 통해 골고루 다시 분배해 주면 세금 징수이전에 발생한 사회적 격차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결과를 낳는다. 아래의 표가 보편적 복지의 기본적 원리와 분배정책의 효과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표 2〉 보편적 복지국가의 분배정책과 사회적 격차감소의 효과

그룹	평균수입	세금 (40%)	재분배	재분배 후 최종수입
A (20%)	1000	400	240	840
B (20%)	800	320	240	720
C (20%)	600	240	240	600
D (20%)	400	160	240	480
E (20%)	200	80	240	360
A와 E 그룹의 수입격차	1/5	1200	1200/5=240	1/2,33

출처: Rothstein 1994:179쪽.

위의 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사회 각 계층이 골고루 20퍼센트씩 분포되어 있는 사회에서 최고 소득층(1000단위)와 최저소득층(200단위)간의 격차를 동일한 세금(40%)을 부과해 징수된 전체 1200단위를 다시 동일하게 재분배하기 위해 사회 5단위로 나눈 값을 나눠준 뒤 두 계층간의 수입격차를 측정해 보면 최초의 1/5에서 1/2, 33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실 정치에서는 재분배는 현금이 아닌 전국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분배되는 의료보험, 보건, 아동 및 유아복지, 노인복지, 학교교육, 각종 보조금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실질적 보편적 복지국가는 누진세를 통해 저소득층에게는 기본공제액만을 부담하게 하지만, 고소득층일수록 세율이 높아져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일괄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세제로는 법인세, 각종 간접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등을 들 수 있다.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 및 기업의 소득세 (Income Tax) 특히 누진적 개인소득세를 적용하여, 수입이 높은 사람들에게 고액의 세금을 부담시키는 고부담-고혜택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저소득층에게는 일괄적으로 지방세만 징수하지만 고소득층에게는 국세를 2단계에 걸쳐 징수하며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급속도로 증가한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연봉이 300,000

크로네 이하의 근로자에게는 31퍼센트의 지방세만 징수하지만, 연봉이 1000만 크로네 이상의 봉급자에게는 지방세와 국세포함 54.9퍼센트를 세금을 부담하게 한다. 2단계로 되어있는 국세는 아래 표 4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따라서 국세는 복지제도의 재분배 효과를 통해 빈부격차를 줄이고 전반적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표 3〉 2010년 기준 소득세 적용에 따른 세액 및 총임금대비 세율

총임금 (Gross Income)	지방세 평균31%	국세20%	국세5%	총임금대비세율
300,000	93,000			31,0%
500,000	155,000	25,580		36,1%
800,000	248,000	85,580	13,365	43,0%
1,000,000	310,000	150,400	23,364	48,3%
10,000,000	3,100,000	1,925,580	473,000	54,9%

출처: Swedish Tax Office

〈표 4〉 소득세제 개편 추이 (2006-2010)

	하위 (1차 상한선)	상위 (2차 상한선)
2006	306,200	461,900
2007	316,700	476,700
2008	328,800	495,000
2009	367,600	526,200
2010	372,100	532,700

주: 1차상한 연봉기준 372.000 (월급여 31.000크로네), 2차상한 연봉기준532.700 (월급여 44.391크로네). 상세한 상한제 기준 표는 표3 참조
출처: Swedish Tax Office

이와 함께 기업의 법인세와는 별도로 고용주세 혹은 사회보장세(Employer's Tax)를 적용하여 피고용인의 연금 (Pension), 건강보험료(Health Insurance), 부모보험료(Parental Insurance), 산업재해보험(Accident and Disaster Insurance), 노동시장기금 (Labor Market Fund) 즉 구조조정 준비금 혹은 실업세 등을 부담한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책정된 최근 4년 동안 고용세의 사용처를 보면, 가장 높은 비율인 10.21퍼센트가 퇴직연금으로 쓰이고, 2008년까지 건강보험료가 두 번째로 높은 항목이었으나 우익정권의 등장과 함께 건강보험료의 심사기준의 강화와 재할프로그램의 강화 등으로 절약된 부분만큼 인하를 해 일반봉급세로 돌려 국가가 일반세로 활용하고 있다.

〈표 5〉 스웨덴 고용세의 배분 (2007-2010)

용도	2007	2008	2009	2010
퇴직연금	10,21 %	10,21 %	10,21 %	10,21 %
사망시 가족승계연금비용 ¹	1,70 %	1,70 %	1,70 %	1,70 %
건강보험료	8,78 %	7,71 %	6,71 %	5,95 %
부모보험료 ²	2,20 %	2,20 %	2,20 %	2,20 %
산업재해보험	0,68 %	0,68 %	0,68 %	0,68 %
노동시장기금	4,45 %	2,43 %	2,43 %	4,65 %
일반보급세	4,40 %	7,49 %	7,49 %	6,03 %
합계	32,42 %	32,42 %	31,42 %	31,42 %

주: 1. 사망 시 가족이 승계하는 연금은 승계연금법에 따라 시행된다. 함께 살았던 부인이나 남편의 경우 재혼을 하지 않을 시 사망시점까지 승계연금을 받게 되어 있다. 스웨덴의 경우 법적 혼인부부 이외에도 동거증명서를 제출한 마지막 동거파트너가 연금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20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 20세까지 승계연금을 받게 된다. 승계연금의 산출은 승계연금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연금금액의 크기와 승계연금 혜택자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2. 가족보험으로 출생부모지원금으로 사용됨

출처: Swedish Tax Office

고용세는 1970년대에는 11.90퍼센트에 그쳤으나 그 후 급속히 상향되어 10년 후에는 32.45퍼센트까지 상승되고 그 뒤 1990년에는 최고 수준인 38.97퍼센트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31.42퍼센트까지 약간 낮추어져 있는 상황이다. 고용세는 스웨덴 복지제도의 중요한 골격을 이루는 피고용자의 복지의 상당부분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고용세는 스웨덴 사회복지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지만, 더욱 중요한 점으로 기업이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때 이미 적립되어 있는 노동시장기금으로 실업자수당을 지급하며, 국가의 직업소개소(AF, Arbetsförmedling, Employment Service Agency)와의 유기적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재취업교육, 업종변경을 위한 기금제공 등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용도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스웨덴 노동시장이 유연성으로 인해 높은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진다.

〈표 6〉 기업의 고용세 (복지서비스세)의 변화

연도	고용세
1970	11,90 %
1975	24,27 %
1980	32,45 %
1985	33,46 %
1990	38,97 %
1995	32,84 %
2000	32,92 %
2005	32,46 %
2010	31,42 %

출처: Swedish Tax Office

유럽국가들과 스웨덴의 역대 세금부담율의 비교를 보면 스웨덴의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증가했는지 알 수 있다. 아래 표에서 보듯 스웨덴에서 복지제도가 완전히 정착이 되지 않은 1950-60년대까지만 해도 독일, 영국, 핀란드에 비해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1970년대 들어 소득세의 급격한 인상과 기업의 고용주세를 대폭 상향조정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수직 상승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개인소득세, 법인세 등의 직접세와 고용주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간접세를 합한 총 세금의 국민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7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줄곧 세계최고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표 7〉 유럽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한 스웨덴의 GDP 대비 세금부담율 변화 (1925-1996)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영국	독일
1925	16.0	19.6	20.9	21.6	22.6	17.8
1933	18.9	20.1	25.1	20.1	25.2	23.0
1950	21.0	19.8	-	27.8	33.1	30.1
1960	28.7	25.3	32.0	27.5	27.3	33.9
1977	53.3	41.9	47.5	41.2	36.6	38.2
1996	55.2	52.0	45.0	48.8	35.9	42.0

출처: Rodriguez, Den svenska skattheistorien (1925 - 77) och OECD Revenue Statistics (1996).

스웨덴의 높아진 복지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1970년 들어 10년 전에 비해 11%가 상승한 40.1%로 대폭 상승하고 다시 10년 후에는 10%가 상승하여 50%의 벽을 넘어섰다. GDP대비 세금부담율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는 1990대였고 무려 55.7%에 이른다. 난 이후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2006년 이후 우익정권의 세금인하정책에 따라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표 8〉 스웨덴 세금부담율의 변화

연도	비중
1930	9,9 %
1940	14,8 %
1950	21,0 %
1960	28,7 %
1970	40,1 %
1980	50,0 %
1990	55,7 %
2000	51,9 %
2005	49,4 %
2006	48,8 %
2007	47,9 %
2008	46,9 %
2009	47,2 %

주: 세금부담율은 GDP에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자료: Rodriguez E 1981, Den svenska skattheistorien (The Swedish Tax History)(1900-1975), Swedish Tax Office (1976-1992), SCB (1993-)

스웨덴의 세금부담율을 2009년 기준 비교해 보면 덴마크가 48,2퍼센트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뒤를 이어 1퍼센트 뒤진 2위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아직도 매우 높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OECD 평균치는 34,8%에 머물고 있는 것에 비하면 무려 12,4%나 높은 세금을 스웨덴이 부담하고 있다. 3위인 이태리(43,5%), 7위인 프랑스도 40퍼센트 이상의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으며 이에 비해 한국은 일본(28,1%)과 미국(24,0%)의 중간 정도인 25,6퍼센트로 OECD 평균치를 밑돌고 있다.

〈표 9〉 OECD 세금부담율의 비교 (2009)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덴마크	48,2 %	18.폴란드	34,3 %
2.스웨덴	47,2 %	19.아이슬란드	34,1 %
3.이태리	43,5 %	20.이스라엘	31,4 %
4.벨기에	43,2 %	21.캐나다	31,1 %
5.핀란드	43,1 %	22.뉴질랜드	31,0 %
6.오스트리아	42,8 %	23.스페인	30,7 %
7.프랑스	41,9 %	24.스위스	30,3 %
8.노르웨이	41,0 %	25.그리스	29,4 %
9.네덜란드	39,1 %	26.슬로바키아	29,3 %
10.헝가리	39,1 %	27.일본	28,1 %
11.슬로베니아	37,9 %	28.아일랜드	27,8 %
12.룩셈부르크	37,5 %	29.오스트리아	27,1 %
13.독일	37,0 %	30.한국	25,6 %
14.포르투갈	35,2 %	31.터어키	24,6 %
15.OECD평균	34,8 %	32.미국	24,0 %
16.체코	34,8 %	33.칠레	18,2 %
17.영국	34,3 %	34.멕시코	17,5 %

자료: 출처: OECD Revenue Statistics 2010

높은 세금부담율로 확보된 세금으로 보편적 복지의 유지를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정부지출에서 차지하는 사회보장비용 비율도 당연히 높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스웨덴의 GDP에서 차지하는 사회지출비용은 1990년 30,5퍼센트로 가장 높고 이 같은 추세는 2005년에도 지속되어 약간 낮아진 29,4퍼센트에 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국인 독일, 덴마크, 핀란드에 비해 2-3퍼센트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국가는 고세율-고혜택의 전형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다.

〈표 10〉 기타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한 스웨덴 GDP 대비 사회지출비용 (1990/2005)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영국	독일	일본	한국
1990	30.5	25.5	22.6	24.5	17.2	22.5	11.2	3.0
2005	29.4	26.9	21.6	26.1	21.3	26.7	18.6	6.9

출처: OECD 2008. Factbook 2008: Economic ,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Paris. OECD; OECD 2009. Social Expenditure: Aggregated Date. <http://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스웨덴의 2011년 예산을 통해 보면 어떤 항목으로 지출되는지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스웨덴 예산 항목은 27개에 이르고 있는데, 그 중 9항목에서부터 11항목까지가 실질적 사회복지 지출비용으로 책정되며 이 항목들이 차지하는 부분은 2767억 크로네로 스웨덴의 전체 예산인 8100억 크로네 중 33퍼센트를 차지한다. 그 이외에도 학비보조금(15항목), 교육연구(16항목), 지방교부금(25항목) 등의 비용이 무상교육, 학업보조금, 기초 및 광역지방자치 사회복지비용 등을 포함시킨다면 50퍼센트 이상을 상회하게 된다. 그만큼 스웨덴의 예산은 복지를 중심으로 운용하는 재정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1〉 스웨덴 2011년 예산항목

지출항목	(x 1000)	지출항목	(x 1000)
1.국가통치	11,632,895	15.학비보조	23,472,135
2.국가재무/투자	12,998,129	16.교육연구	54,531,516
3.세무/회계/관세청	10,008,981	17.문화/미디어/여가	12,194,817
4.사법	36,757,653	18.건설/주택/인프라	1,282,195
5.국제활동	2,001,841	19.지역발전	3,509,701
6.국방/위기관리	45,306,118	20.환경	5,128,861
7.국제원조	30,512,985	21.에너지	2,870,194
8.이민국	7,157,361	22.통신	40,124,753
9.건강/보건/사회보장	60,066,950	23.농촌/소비재	17,866,635
10.병가수당/장애자	93,840,789	24.산업	5,473,580
11.연금	40,624,493	25.지방교부금	88,024,654
12.가족/아동	73,092,355	26.채무이자비용	25,970,000
13.사회통합/양성평등	6,027,600	27.EU부담금	30,637,317
14.노동시장	69,631,844	28.합계	810,746 352

자료: Regeringens proposition 2010/11:1 (예산법안)

그렇다면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국가는 어떠한 설득논리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자. 에스핑 안데센(Esping-Andersen 1999), 세인즈베리(Sainsbury 1994), 베리크비스트(Bergqvist et al. 1999) 등의 학자들은 평등성이 보장된 보편적 복지국가는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사회발전에 기여한다고 지적한다. 복지제도는 자본주의에서 불가피하게 파생되는 사회적 불평등과 소외계급의 등장, 저소득층의 상대적 가치박탈 등이 사회갈등과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본 것이다 (Esping-Andersen 1990:11쪽 Sainsbury 1994:10쪽). 이들은 재분배정책이 경제적 재화의 불균형을 해소시키고, 무상교육을 통해 사회적, 육체적, 지적 차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공정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만큼 보편적 복지는 평등성을 지향하게 된다.

에스핑 안데르센은 평등사회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특징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이 사회적 안정성이라고 보았다. 그는 평등주의(Egalitarianism)사상이 사회주의 계열이 추구하는 정치사회적 가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익정당인 보수당도 복지를 통한 평등적 가치의 추구는 스웨덴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지적한다. 스웨덴 보수당의 평등에 관한 시각은 보편적 복지를 통해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해 줌으로써 개인간, 계층간, 지역간의 격차가 줄어 사회적 안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높은 사회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정책이라고 못 박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http://www.moderat.se/material/pdf/ffiler/moderat_11799.pdf 참조. 그 믿음의 바탕에는 보편적 복지제도가 사회갈등을 미연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사회의 안정을 바탕으로 지속적 경제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보편적 복지제도는 결국 에스핑-안데르센이 지적하는 것처럼 상당히 높은 수준의 평등을 지향하며 이는 다시 사회안정과 경제발전에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Esping-Andersen (1990), 37쪽

나. 대 타협과 협의적 제도를 통한 복지제도의 구축

여러 학자들이 스웨덴 복지모델의 특징을 서술하고 있다. 아터(David Arter)는 포괄적으로 7가지로 구분하여 북유럽모델, 특히 스웨덴 모델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 노조의 협조를 바탕으로 한 시민당의 장기집권, 둘째, 다당체제하에서의 좌우정당 공조체제, 셋째, 대립적 정책을 배제한 협의적 정책결정양식, 넷째, 포괄적이며 거의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익집단과의 정책협의, 다섯째, 중앙통제식 집단거래체제, 여섯째, 국가주도형(국가경영형) 시장경제 및 사회보장체제, 일곱째, 정치엘리트의 상호교환적이며 실용적인 정치행태 등을 들고 있다 (Arter 1999: 147-149쪽). 결국 협의적 과정을 통한 동의를 이끌어내는 실용적인 행태는 스웨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레이파르트(Arend Lijphart)는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국가들의 복지제도의 구축과 안정적인 정치의 배경으로 동질적 정치문화(homogenous political culture)와 정치엘리트들의 협조적 정치행태(cooperative elite behaviour)를 제시하고 있다 (Lijphart 1969 3-44쪽). 결국 스웨덴의 복지제도를 가능하게 한 것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책협의와 협조적 정치행태를 들 수 있다. 베르크비스트(Christina Bergqvist) 역시 균형 잡힌 경제정책과 복지제도의 상호연관성, 그리고 높은 개방성과 투명성, 협의의 정신, 실용주의, 그리고 친여성적 복지정책과 양성평등을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Bergqvist et al. 1999: 3-6), 레인(Jan-Erik Lane)은 3C 즉 타협(Compromise), 협력(Co-operation), 그리고 합의(Consensus)의 세가지 요소를 갖춘 사회공학(Social engineering)적 특징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Lane 1991:1-8).

1950년대 이르러 시민당의 지배체제가 장기화 되면서 사회지배구조가 노조와 좌익계열이 완전히 정치와 사회를 지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균형 잡힌 정책이 가능했던 것은 1938년 이후 살트셰바덴 조약 (Saltsjöbaden Agreement)을 바탕으로 노사간의 평화적 관계가 구축된 이후 시민당은 에르란데르 수상 노력으로 수상관저에서 노사정 회의를 위한 목요일클럽 (Thursday Club)을 이끌어왔고, 살트셰바덴 조약은 1930년대 당시 노사간의 대립적 관계의 해소없이 스웨덴 경제발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정부의 중재노력과 노사간의 이해관계의 일치로 보아 가능했다. 1938년 서명된 이 조약 이후 노동쟁의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스웨덴 경제가 고도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Pettersson 2000: 19-20쪽 Korpi 1994:21-23쪽). 스웨덴 정치사에 이 조약은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정치의식과 사회문화의 기초를 바꿔놓은 대사건이라는 뜻으로 살트셰바덴정신(The Saltsjöbaden Spirit)이라 명명되고 있다. . 특별사안이 있을 때나 매년 여름휴가 기간동안 수상 여름 별장인 하르프순드(Harpsund)에서 노사 이익단체장과 정책협의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면서 노사정간에 상호신뢰의 틀이 마련되었고, 국가경제발전과 복지제도의 중요한 주춧돌 역할을 수행했다(Arter 1999:162쪽 Lewin 1988:187쪽).에르란데르(Tage Erlander) 수상은 당시 노사대표 들을 목요일마다 수상관저에 초청하여 경

제 및 사회 정책분야의 공조를 이끌어냈다. 이를 두고 스웨덴 정치사에서는 목요일클럽으로 서술하고 있다 (Arter 1999; Lewin 1988). 1950년대 좌익계열의 지배적 상황에서 목요일클럽과 하르프순드회의 같은 좌우를 초월한 정책협의는 복지제도의 시행초기부터 60-70년대의 황금기까지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이 같은 전통은 팔메 수상 시절에도 좌우의 정책공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알메달 정치박람회의 주춧돌을 놓았고 1968년 시작한 이 행사는 아직도 처음 시작한 스웨덴의 고틀란드 섬에 있는 알메달렌에서 매년 7월초에 7개정당이 매일 하루씩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국민과의 대화, 이익단체들과의 화합을 이끌어 내고 있다. 1991년 경제위기 당시 수상이었던 칼손(Ingvar Carlsson) 이 여야대표, 노사대표를 하가성(Haga Castle)으로 초청하여 빅딜을 이끌어내기도 했으며 우익정당들이 정권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노사정 대표들을 모아 정국과 사회, 경제 정책의 틀을 짜고 논의하는 전통은 지속되고 있다. 이를 두고 하가협상(Överläggning i Haga Haga Deal 혹은 Haga Agreement)라고 불리며 최근에도 사회적 문제가 된 연금생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수상과 전국연금생활자협회와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그 전통은 지속되고 있다 (Veteranen 2009-5-26).

이 같은 좌우간의 정책공조와 협의정치는 좌우연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1933-36, 1936-39, 그리고 1951-1957년 등 세 번에 걸쳐 있었던 사민당과 농민당의 연립정권수립은 복지제도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노사정 협의와 함께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 (Hadenius 2003:60-64쪽 Dahlberg 1999). 1930-40년대 기간 동안 입안된 대표적인 사회정책인 국민연금, 실업보험, 의료건강제도, 가족기금 등 사민당의 중요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농민당의 참여를 통해 정권의 안정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볼 때 협의의 정치는 1930-40년대의 초기 복지제도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에스핑-안테르센은 사민당이 1930년대에 국민의 집이라는 사회정책목표의 실현과, 1970년대 이후 중산층까지 포함한 복지국가(middle-class welfare state)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이 노조의 동원만을 통한 지지율의 극대화가 아니라, 1950년 이후 새로 형성된 신중산층과의 협조와 지지를 바탕으로 실현될 수 있었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지적한다 (Esping-Andersen 1992:37쪽 Fredriksson and Gunnmo 1985).

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복지제도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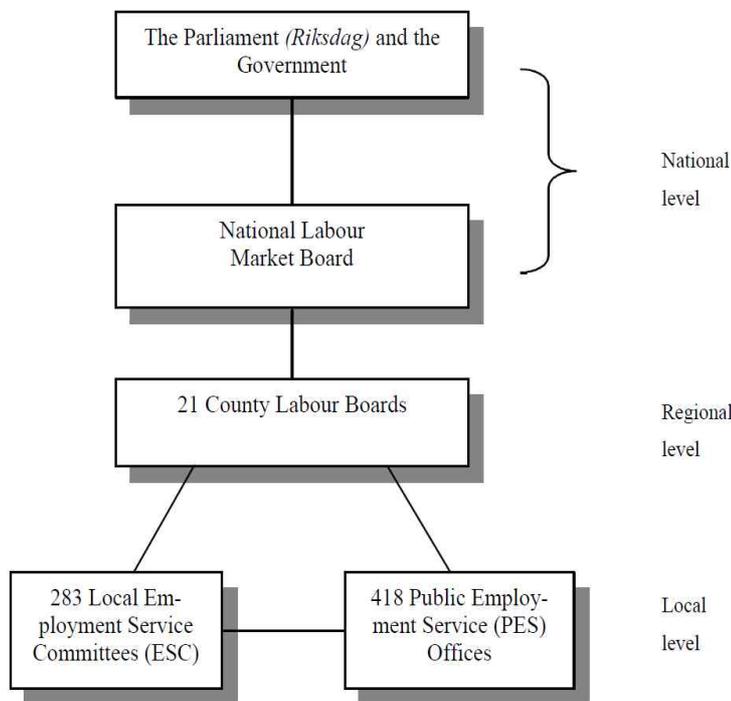
스웨덴 복지제도는 완전고용정책을 통한 경제성장 및 발전을 지향하는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Esping-Andersen, ed. 1996:38; Thullberg 1994). 스웨덴의 복지가 안정적인 재원의 공급을 필요로 하는 보편적 복지라는 사실을 이미 언급되었다.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운용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 어떻게 확보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봉급생활자의 고세율 및 각종 간접세금 예를 들어 흡연세, 유류소비세, 음주세, 요식업 서비스세 등의 생활과 밀접한 세제와, 기업이 지불하는 법인세, 그리고 피고용자에게 지불하는 고용주세 (즉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세) 등의 다양한 세금이 그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결국 경제 주체들의 적극적 생산참여를 통해 얻은 임금, 기업수익, 소비세 등에 기초한다. 따라서 실업율이 높은 상황속에서는 보편적 복지의 엄청난 재원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완전고용을 통한 2-3퍼센트의 낮은 실업율의

유지, 인플레이 억제를 통한 실질임금의 상승을 유도하는 경제정책은 좌우정당간의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었다.

완전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민당정권이 택한 정책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었다 (Esping-Andersen, ed. 1996:39); Rothstein 1986, 1994, 1996). 즉 경제호황기에는 고용을 위해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없지만 불황기에는 구조조정을 통해 솟아져 나오는 실업자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재교육, 재배치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스웨덴이 1948년 설립한 국가노동시장위원회(AMS; National Labor Market Board)와 노동시장지방사무처 (Länsarbetsnämnd, Local Labor Committee)로 구분되어 각 지방사무국에서 실업자들이 재취업될 때까지 책임지고 알선하는 역할을 떠 맡았다 (Riksrevisionen 2006:17쪽). 노동시장위원회는 정부 및 의회의 통제를 받으며 산하 21개 지역사무소가 있고, 283개의 군직업소위원회 418개의 직업소개서는 각 지역사무소의 관리감독하에 놓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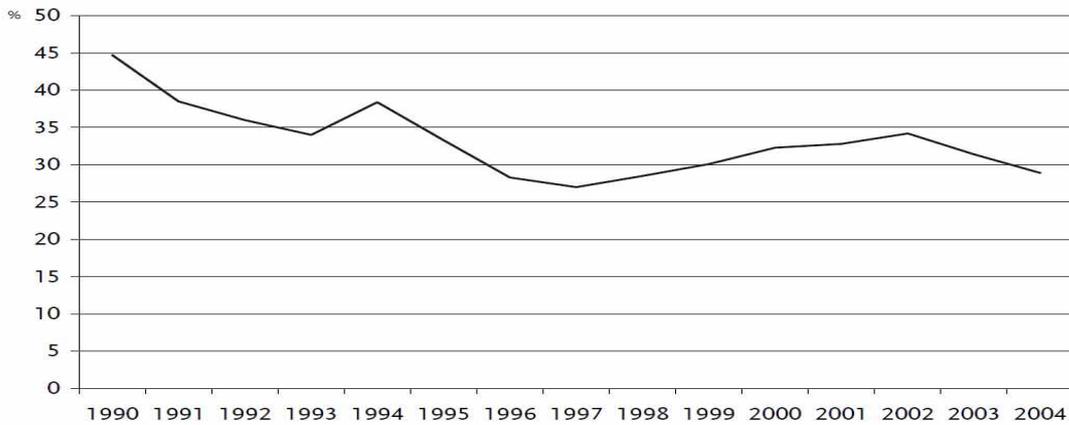
[그림 1] 국영직업소개서 조직



자료: Skedinger & Lundin 2000: 7쪽.

이 직업소개소의 역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의뢰한 일자리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구직자들에게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적당한 구직자가 없을 때 재교육을 시켜 수요의 요구에 걸맞는 공급을 창출해 내는 역할까지 담당한다. 따라서 실업자의 경우 업종변경을 위한 재교육의 경우 재정적 지원까지 해 주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국영직업소개소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노동시장에 공급하는 노동력의 비율은 매우 높았으나, 1990년대 이후 서서히 감소하여 2000년대 중반에는 30퍼센트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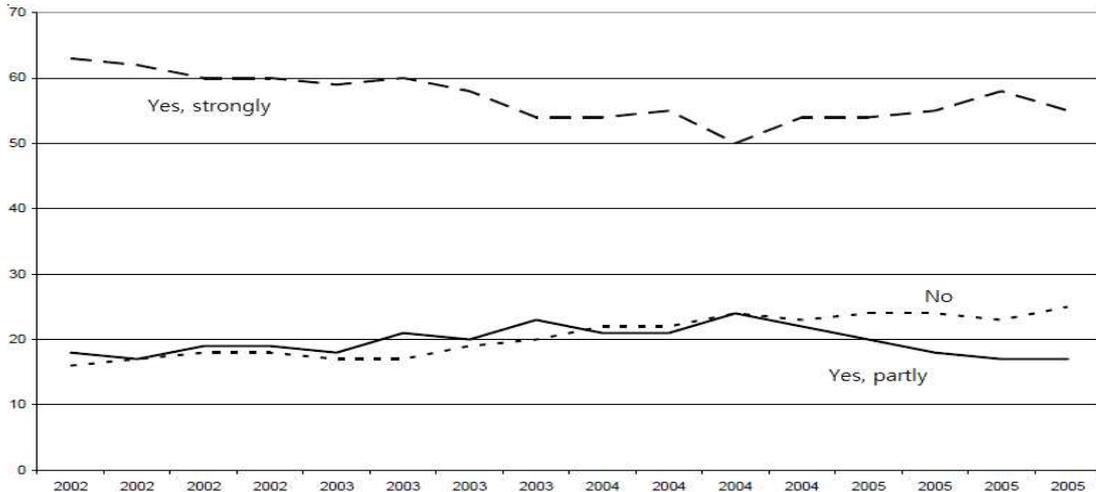
[그림 2] 국영직업소개소의 유효노동수요 공급율



자료: Riksrevisionen 2006: 25쪽.

국영직업소개소의 활동이 1990년대 들어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직업소개소의 서비스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난다. 매달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수강생과 국영직업소를 통해 구직을 원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05년 기간 동안 측정한 여론조사에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아주 만족과 대체로 만족하는 두 그룹을 합하면 이용자 중 70-80퍼센트 정도가 서비스와 교육에 만족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제공되는 재취업 교육프로그램과 모든 서비스를 통틀어 측정한 통계치로 국영직업소에 대한 평가를 잘 반영해 준다.

[그림 3] 국영직업소개소의 재취업교육 및 서비스 만족도



자료: Riksrevisionen 2006 부록: 5쪽.

1948년 설립된 국가노동시장위원회는 2008년부터 조직개편을 단행해 국영직업소개소 AF (National Employment Service Office)로 명칭을 바꾸고 보다 효율적인 실업자 재취업교육과 일반인 직업교육, 그리고 청년구직자의 구직서비스 등 다양한 직업소개 및 재취업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 개혁은 2006년 들어선 우익정권이 보다 효율적인 실업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행되었으며 구직자의

요구와 기업의 희망에 따른 맞춤형교육과 장애인, 이민출신 구직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프로그램, 수요와 공급의 정확한 예측을 위한 통계의 제공 등 다양한 구직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노조, 기업, 그리고 실업자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익정권 하에서의 효율적인 직업교육과 직업소개를 위한 노력으로 중앙기구인 AF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통계의 정확한 예측과 제공을 위한 업무를 전담하고, 실업보험을 재교육보험으로 변경하고 장기실업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방의 직업소개사무소는 일대일 전담 코치제를 두어 청소년 실업자, 장애인실업자, 외국인 실업자 등 구조적으로 장기실업상태에 있는 사회계층의 노동시장 투입을 위해 특별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등 중장기 실업자의 감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F Rapport 2010).

라. 지방분권화를 통한 복지서비스

스웨덴의 복지서비스는 1970년대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어 실행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는 전통적으로 교구를 중심으로 구분되었으나 1952년, 1971년 두 번에 걸친 지방자치개혁을 단행을 통해 재 조정되었다. 스웨덴에는 두 개의 광역단체가 존재하는데, 랜(Län, Administrative County Council)은 행정구역상 사용되는 개념이고, 사회복지개념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란스팅(Landsting, County Council)이 있다. 랜은 1600년대 이후 사용된 개념으로 행정구역상 구분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란스팅은 행정적으로 랜에 속하나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복지서비스의 일부인 보건, 의료, 건강부분을 관할하기 위해 자체 세금을 징수하고, 행정부는 직접선거를 통한 광역의회(Landstingsfullmäktige)에서 임명한다. 랜은 일반 광역자치단체의 업무를 관장하고 란스팅은 1990년 지방자치법(1990:900)에 따라 보건, 의료, 치과 등의 보건의료서비스 및 통학버스를 제외한 교통 (버스, 지하철 및 장애인 교통서비스) 등을 총괄한다. 현재 21개의 랜과 20개의 란스팅을 두고 있으며, 랜의 행정장(Lanshövding, County Governor)은 정부에서 임명하며, 란스팅의 행정장은 직접선거에서 승리한 최대정당 혹은 연립정당에서 임명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본단위인 콤문 (Kommun)의 수는 1971년 개혁 이후 현재 290개를 유지하고 있다. 1971년 행정구조개혁을 통해 경찰, 세무조직, 지방법원을 포함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단행했다. 당시 의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변화된 사회구조에 적응하고 보다 폭넓은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단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geringsproposition 1978/79:61, 4쪽). 평균 290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평균 32,000명의 인구가 거주하며, 가장 큰 스톡홀름의 경우 200만이 거주하며, 가장 작은 뷰르홀름(Bjurholm)의 경우 2500명이 거주한다. 기초지방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아래 표13과 같은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해 준다.

〈표 12〉 지방자치개혁과 기초지방자치단체수의 변화

개혁연도	지방자치단체 수	특징
1863	2500	교구중심의 분류
1952	816	교구를 초월한 통합행 진행 농촌지방을 중심으로 개혁추진
1971	282	경찰, 세무조직, 지방법원의 개혁과 함께 추진
2010	290	주민투표에 의해 새로 신설된 지방자치체를 포함한 수

컴문의 가장 큰 활동영역은 주민서비스 중에서도 복지와 교육과 연관된 활동이 주를 이룬다. 이는 지방자치법(Kommunallagen, Local Government Law)에 따라 확정된 것으로 모든 컴문이 자체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Gustafsson 1980). 스웨덴 복지활동의 특징 중 하나로 입학 전 아동을 포함한 탁아소, 초중등학교, 고등학교의 운영을 컴문이 책임지며 교육의 질과 국가교육지침의 실천사항에 대해서는 중앙기구인 중앙교육위원회(Skolverket, National School Borad)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교육예산이 기초지방단체의 가장 큰 지출부분이고 컴문의 교육분과는 학교장의 임명, 예산배정 뿐 아니라 학교관리감독을 책임지는 막강한 부서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이 노인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분야로 전체 지출예산의 30퍼센트에 이르는 예산을 배정받는다. 기타 보조금, 개인복지서비스 등을 포함한 복지서비스 분야가 컴문 예산의 51퍼센트를 차지하고, 무상교육인 교육분야까지 합하면 85퍼센트의 예산이 교육, 사회복지에 투입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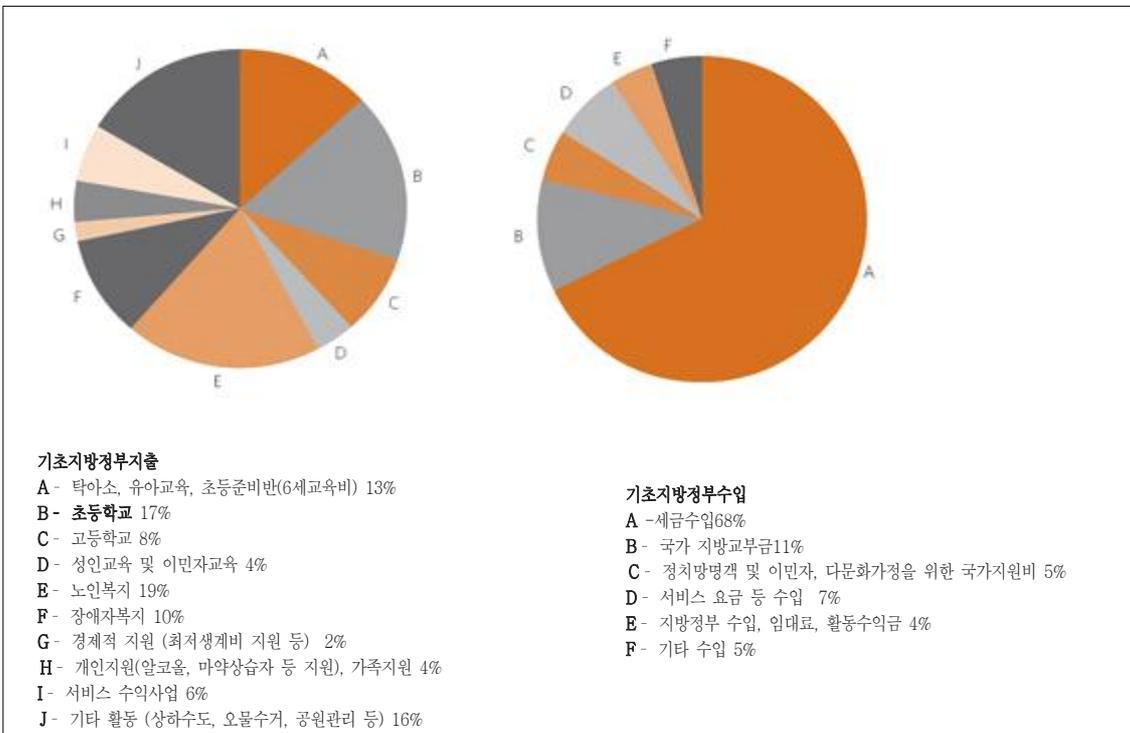
〈표 13〉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영역

활동영역	예산지출 %	해당법
정치영역 - 지방의원 봉급 - 정당보조금 - 정치인 비서관 봉급	1%	지방자치법, 선거법
사회기반시설 및 예방 - 기술과 - 지방산업육성 - 도로, 하천, 공원관리 - 환경, 건강 및 지속적 발전 - SOS, 예비군, 사회재난구조	6%	도시계획법, 환경법, 재난구조법, 소비자보호법, 에너지법
여가 및 문화 - 시민단체활동보조 - 도서관, 미술관, 문화관운영 - 문화 및 여가활동 보조 - 청소년의 집 운영	6%	지방자치법
보육 및 탁아소 - 탁아소, 유아시설 - 사회보호시설 - 유아교육 시설	12%	교육법
교육 (초중고등) - 초등준비반(6세교육반) - 초등학교 - 중등학교 - 성인학교	34%	교육법, 교육지침서
노인 및 장애인 - 노인장애인 시설 - 양로원	30%	사회보장법, 보건건강법
가정 및 개인치료 - 사회보장비 지급 - 알코올중독, 마약중독자 보호시설 및 보조금	9%	사회보장법
기타활동 - 정치망명객 시설 및 다문화활동지원 - 실업대책	1%	다수의 법
서비스를 통한 수입활동 - 통신 - 에너지, 상하수도, 오물수거	1%	다수 법 및 조례

출처: Molin 2000:37-38쪽.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복지서비스 비용을 2009년 기준의 예산지출 내역으로 확인해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이 가장 큰 38퍼센트를 차지하고, 노인복지(19%), 장애자복지 (10%) 등이 그 뒤를 따르고, 개인 및 소외가정 경제적 지원 등에 6퍼센트가 지출되고 있다. 공공탁아소는 의무적으로 컴문이 만 12개월이 된 아동에게 제공해 주어야 하며 부모수입의 3퍼센트를 탁아소 비용으로 지불하며, 고소득자의 경우에도 너무 높은 비용을 내지 않도록 최상위 한계를 1260크로네로 정해 놓고 있다. 아동이 2인 이면 각각 부모소득의 2% 혹은 최고 840크로네, 3인이면 소득 1% 혹은 420크로네를 지불한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실직상태에 있는 가정의 아동은 하루 3시간, 혹은 주당 15시간까지 탁아소에 위탁하는 아동은 무료로 제공하고, 모든 아동은 3-4개월 이내에 탁아소 자리를 확보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고 학교급식은 컴문마다 차이가 나지만 학생 1인당 전국 평균 35크로네를 식사당 지불을 한다. 이같이 학교교육부분까지 포함하는 복지서비스 부문은 컴문의 가장 중요한 활동영역으로서 스웨덴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4]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출 및 수입 (2009)



자료: 스웨덴 통계청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전국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서 편집한 자료.

http://www.skl.se/web/Kostnader_och_intakter.aspx

컴문의 예산수입내역을 살펴보면, 자체 주민소득세로 68퍼센트를 충당하고, 서비스요금(7%), 각종활동수입금(9%)을 제외한 나머지 복지서비스와 다문화가정 사업비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부분은 중앙행정부의 지방교부금(16%)으로 충당한다. 컴문의 예산은 주로 주민소득세로 충당하는데 전국 평균 31퍼센트의 지방자치체 중에서 65퍼센트에 해당하는 세금을 컴문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란스탕에 배정된다. 스톡홀름시의 예를 들어보면 란스탕 세금이 소득세의 12.10퍼센트, 그리고 컴문에 배정되는 주민소득세는 부저빈고(富底貧高)의 현상에 따라 부자컴문은 적게 징수하고, 가난한 컴문은 높게 주민세를 책정해 징수한

다. 예를 들어 스톡홀름의 솔나(Solna, 17.12%), 단데뤼드(Danderyd, 17.20%), 리딩외(Lidingö, 18.86%) 등의 컴문은 고소득자가 많고 실업율이 낮아 지출비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낮게 책정해도 예산이 충분하나, 보트쉬르카(Botkyrka, 20.13%), 하닝에(Hanninge, 20.08%) 컴문 등은 주민들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고, 주민실업율이 높아 사회지출비용이 많이 필요해 소득세율이 높게 책정된다. 결국 복지소요비용의 적고 많음에 따라 주민소득세의 비율도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지원금 중에서 잘사는 컴문과 가난한 컴문 간의 삶의 질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2004년 균형분배법 (Uljämningslag, Law on Balance of Expenses 2004:773)에 따라 도입된 균형분배기금 (Kostnadsutjämning, Compensation of Expenses) 배정의 원칙에 따라 잘사는 스톡홀름지역 등 도시지역에서 농어촌 지역의 컴문들에게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정식세금은 아니지만 결국 잘사는 지역주민에게는 못사는 지역주민에게 지불되는 세금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명 로빈훅 세금이라고 명명되어 있다. Statskontoret 2009:9, 12쪽. 아래의 표는 전국에서 최고 부유한 지역인 단데뤼드 컴문이 중앙행정위원회의 지침서(Statskontoret 2009:9)에 따라 산정한 2010년 균형분배기금의 산출근거로 차액인 6108 크로네를 주민1인 기준으로 국가에 지불하며, 이 기금은 다시 농어촌의 복지기금명목으로 국가보조금을 지불한다. 2004년 시행 첫해 1200만 크로네에서 2010년 1억 9000만 크로네를 지불한 이후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는 최근 세계재정 위기를 거치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단데뤼드의 경우 주민들의 가계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가난한 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직장을 잃고 장기실업 상태에 빠지면서 사회보장 비용은 더 필요한 구조로 진행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표 14〉 단데뤼드 (Danderyd) 컴문이 산출한 균형분배기금 (국가에 지불하는 비용, 2010년기준)

지출내역	전국	단데뤼드	기금부담금
이동복지	5,647	8,780	3 133
초중등교육 (1-9학년)	8,647	11,206	2 559
고등교육	3,839	3,505	-334
개인 및 가정보조	3,064	1,829	-1,235
다문화 보조	84	0	-84
노인복지	8,633	9,760	1 ,27
인구증감에 따른 비용	175	17	-158
건물임대료 등	180	162	-18
임금 등	0	738	738
공공교통	703	1,083	380
합계	30,972	37,080	6,108

출처: 단데뤼드 컴문 공식 웹.

http://www.danderyd.se/DanderydTemplates/Page_2529.aspx

이 기금은 결국 도시와 농촌 지역간의 격차를 줄이고, 경제적 삶이 여유가 있는 지역의 주민과 소외계층이 많이 있는 지역주민간의 삶의 질 차이를 극복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에서는 운용되는 이 기금을 로빈훅세금으로 부르며, 해당 컴문 내의 소외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지원금을 받고 있는 지역에서도 불만이 목소리가 높다. 즉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낸 세금이 대도시의 도로, 지하철, 공항, 항만시설 등 기간산업시설의 건설에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들이 낸 세금이 대도시를 발전시킨다는 논리로 더 많은 균형분배기금이 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DN 2011-1-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찬반에 관계 없이 균형분배기금이 도시와 농촌, 부유하고 가난한 지역의 불균형적 발전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표 15〉 단테뤼드 컴문의 1인당 및 컴문 전체의 균형분배기금(2004-201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주민 1인당 배당금	410	2,930	3,674	4,118	5,326	5,983	6,107
컴문이 국가에 지불하는 금액	12,3	88,3	111,1	125,6	163,8	184,7	190,6

출처: 단테뤼드 컴문 공식 웹.

http://www.danderyd.se/DanderydTemplates/Page_2529.aspx

1971년 행정구역 개혁과 함께 복지서비스를 대폭 기초단체로 이양하면서 탁아소, 학교, 양로원, 장애인시설 등 지방공무원의 수도 급격히 늘어났다. 1965년 비해 15년 만에 2배로 증가하여 전체 노동인구의 30퍼센트가 공무원이 차지하고 있고 이후 30퍼센트 초반 규모의 공무원 수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반면 1차 산업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여 전체 노동인구의 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 종사자의 수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는 제조업체수가 줄고 있기도 하지만 산업체의 기계화, 자동화를 통해 제조업종사자가 지속적으로 사무직, 서비스업으로 옮겨가고 있기도 하다. 1990년대 이후 줄곧 스웨덴의 산업구조는 사무직과 공공부문의 두 축으로 재편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표 16〉 업종별 노동인구 비율 변화추이 (1965-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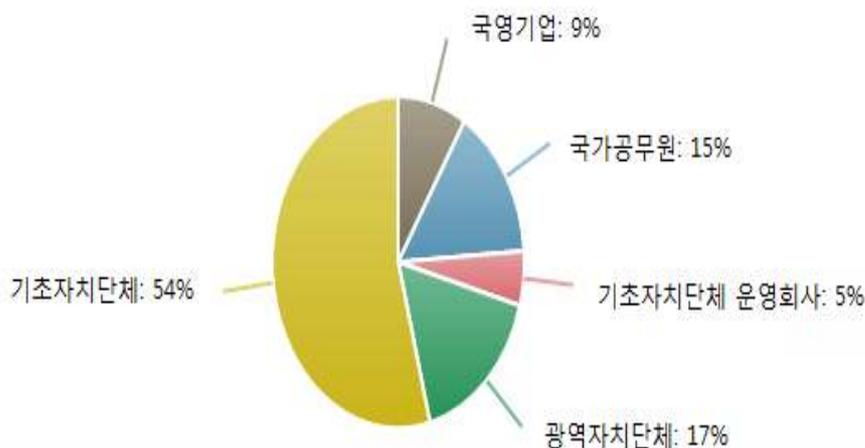
연도	농업/어업/임업	제조업	사무직	공무원
1965	12	30	43	15
1970	8	28	43	21
1975	6	26	42	26
1980	5	25	39	30
1985	5	23	39	33
1990	3	22	43	32
1995	3	20	43	34
2000	2	19	46	33
2005	2	16	48	34
2006	2	16	48	34
2007	2	15	49	34
2008	2	15	49	33
2009	2	14	52	32

자료: SCB, Arbetskraftsundersökningen (노동인구조사)

공무원의 분포를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인구가 가장 많이 차지한다. 아래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초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은 전체 공공부문 종사자의 54퍼센트를 차지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서비스 관계분야까지 포함하면 59퍼센트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사하고 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까지 포함하면 76퍼센트가 기초자치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셈이다. 그만큼 보편적 복지에 직간접으로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 공공조직에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면서 사민당의 지지층으로 자리를 잡았다 (Nilsson 1997).

[그림 5] 공공부문 종사자 비율



지금까지 논의한 스웨덴 복지제도의 특징을 요약하면 아래 표17과 같다. 스웨덴의 복지제도의 특징은 결국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 고세율-고혜택의 보편적 복지를 통한 사회의 안정성 확보
- 평등을 산업경쟁력으로 승화한 복지정책
- 대타협과 협의체제를 바탕으로 한 복지공조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통한 완전고용과 복지제도
- 지방분권화를 통한 복지서비스

이 같은 복지제도의 틀은 2000년대 들어 많은 변화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적 틀은 크게 변형되지 않았다. 따라서 다음 장에는 스웨덴 복지제도의 틀을 구축할 수 있었던 정치적 동인과 사회적 지지요인 등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표17〉 스웨덴 복지제도의 변화와 특징

	내용	특징
보편적 복지모형 ¹	고세율을 통한 고복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직접세(개인소득세, 법인세), 간접세(부가가치세, 고용주세 및 각종 특수세)를 포함한 세금부담금이 국민총생산 대비 세계에서 가장 높은 50퍼센트 수준을 상회했으나 최근 들어 40퍼센트 후반으로 하락됨. 기업의 고용주사회보장세(Employers' Tax)의 도입에 따른 사회보장기금의 기업부담.
대타협과 협의체제	협리적 정책공조체제를 통한 복지정책	살트셰바덴정신 ² , 좌우연정, 목요클럽, 알메달렌 정치박람회
평등을 통한 복지정책	평등을 통한 사회적 안정성의 확보	복지제도는 평등적 사회구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면역력이 있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제도	완전고용,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라는 논리로 복지재정세원이자 국가복지 부담을 낮추는 수단. 높은 실업 시 국가의 부담이 증가되는 문제점.
지방분권화를 통한 복지서비스	지방조직의 정비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1960년대 1500개의 군을 정비해서 290개로 축소함. 공공서비스가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체로 이전. 재원은 세금과 국가보조금, 로빈훅세금 ³ 으로 충당됨.

주: 1. 시민당의 장기집권은 노조의 지원과 보조없이 불가능했다는 헤밀턴(C B Hamilton)의 주장은 보편적 복지제도의 구축 역시 스웨덴의 노조의 적극적 역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논리로 전개된다. 노조의 경우 처음에는 선택적 복지를 지지했다. 노조의 시민당 지원과 경제적 보조에 관해서는 Hamilton 2000, Johnson 1998 등을 참조.
 2. 1938년 노조(LO)와 사용자단체(SAF)가 맺은 산업평화선언을 위한 조약. Hansson 1996 참조.
 3. 로빈훅 세금은 2004년 법제정을 통해 정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복지보조금의 성격으로 정식명칭은 균형분배기금(Compensation Expenses)이라 불림.

제4 절 정치결정론 對 사회결정론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제도는 1932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오면서 세 번에 걸친 좌우정권교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온 배경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명논리를 들 수 있다.

우선 첫째로 정치결정론을 들 수 있다. 좌익계열 정당들은 물론이고 우익정당들까지도 보편적 복지를 통한 기회평준화와 사회통합, 사회발전 모델을 정당들의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시민당의 보편적 복지의 틀을 짜기 시작한 1930년의 시기는 보수정당인 중앙당(전신 농민당)과 정책공조차원을 넘어 연립정권을 통해 이룩해 놓았고, 44년간의 장기간 야당생활 후 집권에 성공한 펠딘(Thorbjörn Fälldin) 수상하의 우익연립정권 시기에도, 앞서서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완전고용과 사회적 안정망의 틀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집권 시정연설에서 약속하는 등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큰 변화 없이 유지하는 것으로 정책노선을 잡아왔다.

1991년 경제위기 후 재 집권한 빌트(Carl Bildt)수상 하의 우익연립정권 기간 동안에도 평등사회는 스웨덴의 트레이드 마크이자 사회발전 동력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복지제도 하에서 작동하지 않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책으로 집권 기간 동안 일관했다는 점, 그리고 2006년 선거에 재 집권을 주도한 라인펠트(Fredrik Reinfeldt) 보수당 수상도 2006년 선거 전략을 "시민당이 약속하는 복지에 플러스 알파를", "진정한사회소외계층을 위한 정당은 보수당"의 논리로 전개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천명하는 등 복지제도의 틀이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점을 보면 정치

적으로 사회발전의 담론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또 하나의 가능한 추론은 정치결정론이 가능한 것은 결국 사회적 요구에 순응하기 위해 불가피했을 것이라 논리이다. 즉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들의 입장에서 국민이 선호하는 정책을 내 놓아야 하고, 집권기간의 성공요인도 결국 국민의 원하는 바를 실현시키지 못하면 재 집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 요구의 방향성에 따라 정치적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논의는 보편적 복지의 필수재원인 유권자들의 세금에 대한 인식, 즉 고세율로 확보된 복지비용으로 보편적 복지를 유지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높은 세금에 대한 저항과 연관지어 정당들의 정책 운신의 폭이 결정되고, 보편적 복지의 유지에 대한 희망과 선호의 정도에 따라 정당의 선거운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회의 요구에 순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위 두가지 요소, 즉 정치결정론일까, 아니면 사회결정론일까, 아니면 두가지 모두 결합한 정치 및 사회결정론일까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이 장에서는 정치결정론을 살펴보기 위해 정당들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입장을 각 당의 선거공약, 정책노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사회결정론의 입장에서 국민들의 좌우 계급투표의 성향이 강할수록 정당의 운신폭이 제한되고 열성 지지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정책에 고립되는 경향이 있으며, 계급투표의 성향이 낮아질수록 정당들의 정책의 선택의 폭은 넓어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계급투표 성향의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만약 계급투표제가 낮아지고 있다면 앞으로 중도계열의 유권자들의 성향에 따라 정권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정책성향을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결정론을 확인해 보기 위해 시민당과 보수당의 계급별 지지도 변화를 살펴보고, 계급투표의 지수 중 하나로 사용되는 알포드지수(Alford Index)의 변화치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18〉 좌우 집권기간의 비교 (1932-2011)

	시민당집권	집권기간	우익집권	집권기간
1932-1982	1932-1976	44년	1976-1982	6년
1982-1994	1982-1991	9년	1991-1994	3년
1994-현재	1994-2006	12년	2006-2010, 2010-	5년 (2011년 현재)
합계 (78년)		65년		14년

1. 좌우정당들의 선거공약 및 정책비교

스웨덴의 역대 선거 중 좌우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세 번의 선거와 최근 2010년 선거의 좌우의 계열 정당들의 주요 선거공약과 이슈, 그리고 선거 이후 행한 의회 시정연설을 내용을 검토해 보면서 복지제도에 대한 시각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1976년 선거는 스웨덴 정치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932년 집권에 성공한 시민당이 집권한 후 44년 동안 한번도 정권을 놓은 적이 없었다. 그만큼 1976년 우익공조체제 하에서 연립정권을 세울 수 있게 한 선거는 우익계열의 입장에서 보면 가히 혁명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전까지 시민당의 집권은 영구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자포자기의 상황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1976년 전후의 상황은 우익정당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우선 말괄량이 삐삐 소설이 인기를 끌자 당시 초기 단계에 있었던 칼라TV를 통해 삐삐의 아동영화가 시리즈로 만들어지자 전국적인 인기를 끌

기 시작하면서 스타덤에 오른 린드그렌(Astrid Lindgren)이 좌우논쟁의 불을 당겼다.

린드그렌이 쓴 글로 받은 인세보다 높게 책정되어 소득세가 102퍼센트가 부과되자, 린드그렌은 폼페리포사(Pomperiposa in Monismanien)이라는 단편을 1976년 3월 10일 석간신문인 익스프레스센(Expressen)에 게재해, 가난한 작가가 글을 써서 받은 인세는 세금을 내고 나면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적어 비참한 생활을 한다는 것을 부각시켜 높은 세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실 린드그렌에게 부과된 세금이 주로 밤 늦게까지 일을 하는 작가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근무시간이외의 특근활동을 보아 세금이 산정된 것이었다. 이 세금의 명칭은 과외노동수당세(Marginalskatt, Marginal Income Tax)라 불리우며,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세제이다. 2011년기준 과외노동수당세는 최고 56.8%가 책정되어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적용되는 가장 낮은 수준은 6.2%로 책정되어 있다 (국세청자료참조)<http://www.skatteverket.se/privat/skatter/arbeteinkomst/vadblirskatten/marginalskatt.4.61589f801118cb2b7b280006375.html>. 린드그렌은 차라리 빚을 저서 큰집을 사면 부채에 대한 세금보전금으로 인해 사치스런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복지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기본봉급이외에 야근, 특근, 과외수입을 위해 더 일하려고 하는 사람의 의욕을 꺾는 세금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빚으로 주택을 사서 이자비용변제를 통한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낸 사람으로 당시 사민당 재무부 장관이었던 스트랭(Gunnar Sträng)을 빗대어 예를 들어 관심을 끌었다. 이 글이 사회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하면서 세금문제가 같은 해 9월에 치러진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상되었다.

이에 힘을 얻은 우익계열 정당들은 높은 세금의 필요성(사민당)과 여성의 책임성을 강조해 (좌익당) 수성하려고 노력했던 좌익정당들의 선거운동에 반하는, 세금인하정책(보수당), 사회주의를 배제한 사회 개혁운동(국민당), 그리고 평등과 환경을 주장한 중앙당의 선거운동을 통해 사민당의 장기집권에서 시도된 사회주의적 개혁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했다. 이같은 세금논쟁은 린드그렌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해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1976년 가을 44년 만에 집권한 우익연립정권의 팔딘(Thorbjörn Fälldin)수상의 최초 정권 수락 연설에서 전체 국민이 원하는 정치, 그리고 국민을 만족시키는 정치를 천명하며 책임정치를 다할 것을 약속했다. 그 실천프로그램으로 4주였던 국민휴가제를 5주로 연장 실시하고, 부모휴가제를 7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는 등 국민여가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성차별 폐지를 통한 양성평등의 실현,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한 활동기금의 세금면제, 그리고 보편적 실업보험제를 실시할 것을 약속하는 등 정책내용으로만 보서는 좌익정권인지 우익정권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보편적 복지의 강화를 통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담고 있다. 이같은 정책은 결국 우익정권이 핵발전폐기 사안의 정책공조의 실패로 연립정권이 한번 깨지는 진통이 있기는 했으나, 1979년 선거에서 재집권을 하는 등 사민당이 아닌 우익정권 하에서 진행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할 수 있다.

1982년 재집권에 성공한 사민당이 1991년까지 집권해 오는 기간 동안 팔메(Olof Palme)수상이 저격으로 사망한 이후 칼손(Ingvar Carlsson) 수상의 주도하에 진행된 자본자유화와 제3의 길의 논쟁을 겪으며 스웨덴 경제가 위기에 처하자 우익정당들에게는 재집권의 기회가 되었다. 1989년부터 1990년까지 주택가격 폭락, HSB 주택은행의 인출금지 등의 경제적 위기를 통해 스웨덴의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자, 고세금과 기업경쟁력을 문제로 지적하는 우익정당들의 선거운동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사민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통적 동지인 노조의 파업금지, 임금동결 등의 극약처방을 쓰자 노조는 사민당과

의 공조를 파기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사민당과 노조간의 장미전쟁(War of Roses)은 우익의 결집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되었다. 이와 함께 사민당의 80년대 중반 이후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주도해 온 펠트(Kjell-Olof Feldt) 전 재무장관의 자서전이 사민당내의 좌우논쟁을 부추기면서 사민당의 전열을 흐려 놓은 결과가 되었다.

〈표 19〉 주요 선거의 이슈, 좌우 선거공약과 시정연설의 특징

	선거공약 및 이슈	선거 후 정부정책
1976	<p>이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세율 논쟁. 말괄량이 삐삐로 유명한 아동작가 린드그렌(Astrid Lindgren)의 세금논쟁축발. 폼페리포사와 세금에 관한 글로 논란. <p>좌익계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금은 복지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함 (사민당) 복지제도 사수를 위한 여성의 책임 (좌익당) <p>우익계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금인하 (보수당) 사회주의를 배척한 사회개혁 (국민당) 평등, 안전한 환경, 탈중앙화 (중앙당) 	<p>우익정당의 시정연설을 통한 정책시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펠트수상은 전체 국민을 만족시키는 책임정치와 국민이 동의하는 정치를 천명 5주휴가제의 시행목표 부모산후 휴가 7개월에서 9월로 연장 성차별법 제정 학생의 창의성을 위한 학습평가제의 도입 인도주의적 기부금의 면세추진 보편적 실업보험제 실시 핵발전소 폐기를 위한 준비작수
1991	<p>이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극우정당 신민주당(NyD) 등장에 따른 논쟁 사민당 전 재무장관 펠트(Kjell-Olof Feldt)의 자서전에서 사민당과 노조의 사상논쟁 비판 <p>좌익계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일도 안심하고 살수 있는 스웨덴, 스웨덴은 다릅니다 (사민당) 보다 정당한 분배를 (좌익당) <p>우익계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시작 (우익공동 선거운동) 범법자에게 더 강한 처벌로 안전한 사회 (보수당) 공무원이 대신 사람을 키우자 (국민당) 사랑스런 스웨덴, 사랑스런 중앙당 (중앙당) 가정의 역할, 스웨덴의 전통 (기독교민주당) 	<p>우익정당의 시정연설을 통한 정책시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빌트수상은 새로운 스웨덴 출발을 위해 4가지 선결과제를 제시함. EU가입을 통한 경제성장 경제둔화를 극복해 경제에 활력을 넣기 위한 노력 보편적 복지의 틀속에서 개인의 선택권을 위한 개혁과 사회의 가장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프로그램 실천 깨끗한 물, 공기, 살아있는 숲과 호수를 통한 장기적, 지속적 발전
2006	<p>이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가 넘는 청소년 실업, 7%를 기록하고 있는 전체 실업률로 일자리창출이 주요 이슈 언어검증시험 등 보다 엄격한 외국인 정책 등 인종차별 논란 <p>좌익계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같이 함께 갑시다 (사민당) 평등정의는 좌로부터 옵니다 (좌익당) <p>우익계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웨덴을 위한 정치동맹 (우익공동선거운동) 스웨덴은 새로운 노동자 당이 필요합니다 (보수당) 미래 스웨덴을 위한 선택 (국민당)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중앙당) 	<p>우익정당의 시정연설을 통한 정책시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인펠트수상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열린 정당을 천명함. 보통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 일자리가 가장 큰 개인복지 여성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가 중요 사회보장을 통한 국민의 편한 삶, 누구에게나 공평한 사회복지 사회발전을 위한 공동의 책임 장기적 안목의 경제발전을 위한 정치

자료: 저자. 스웨덴 각 정당의 웹과 의회 (<http://www.riksdagen.se>) 등에서 제공한 선거운동사를 정리.

선거운동에서 특별한 메시지도 없이 경제위기와 장미의 전쟁 장미의 전쟁이라 불리는 사민당내 당내 갈등은 사민당내 제3의 길을 당노선으로 택하자는 당내우파와 노조중심의 좌파의 싸움을 가르키며 당시 재무부장관이었던 펠트(Kjell-Olof Feldt)와 노조위원장 (Stig Malm)과의 내분을 일컫는다 (Feldt 1991). 이로 인한 사민당의 내분으로 어부지리를 획득한 우익 4개 정당들이 정권을 수립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정연설을 통해, 빌트(Carl Bildt)수상은 4가지 실천사항을 집권 기간 동안 이루겠다고 천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첫째, EU가입을 통한 지속적 경제성장, 둘째, 경제둔화를 극복해 경제에 활력을 넣기 위한 노력, 셋째, 보편적 복지의 틀 속에서 개인의 선택권을 위한 개혁과 사회의 가장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프로그램 실천, 그리고 넷째, 깨끗한 물, 공기, 살아있는 숲과 호수를 통한 장기적, 지속적 발전 등이다. 이 네 가지 약속 중 세 번째 항목에서 지속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유지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특단 정책을 쓸 것을 천명하면서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개인의 선택적 의료 제도를 도입할 것을 약속했다.

물론 빌트의 시정연설은 개인의 선택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국민 앞에 보편적 복지의 사수를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전달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졌다는데 의의가 있다. 빌트의 3년 집권 기간 동안 막대한 재정적자를 무릅쓰고 복지제도를 유지하려 한 점은 1994년 집권에 성공한 사민당의 짐이 되어 도리어 1994년과 1998년 동안 집권 기간 동안 의료개혁, 학교개혁, 노인복지 개혁, 연금개혁 등의 우익정책을 통해 재정적자를 축소를 위해 노력하는 등 시행 정책으로만 보면 정당색채를 분간하지 못할 만큼 정책의 포괄정당화(Catch-all Party)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ersson 1997).

2006년의 선거는 우익정당들이 다시 정권에 복귀한 시기이다. 2006년 선거에서는 20%가 넘는 청년실업과 전체 실업률이 7%를 기록하는 등 실업문제가 가장 크게 부각된 선거였다. 사민당은 이같이 어려운 시기에 책임을 서로 나누는 “다함께 감시다”라는 전통적 좌익구호를 들고 나왔고, 좌익계열의 또 다른 축인 좌익당은 평등을 통한 정의의 구현의 좌익이 실현한다는 상당히 진부한 사상구호를 들고 나왔으나, 우익계열 정당들은 스웨덴 개조를 위한 새로운 정치동맹(Alliance for New Sweden)의 구호로 유권자를 파고 들었다. 그 중에서도 보수당의 “스웨덴의 유일한 노동자를 위한 정당은 보수당”이라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복지에서 소외된 실직 노동자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주는 정당은 보수당이라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이같은 논리와 새로 등장한 보수당 당수 라인펠트 (Fredrick Reinfeldt)의 신선한 이미지로 젊은 유권자의 지지를 바탕으로 우익정권이 다시 12만에 사민당으로부터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2010년 10월 6일 라인펠트의 시정연설에서도 보편적 복지의 대개혁을 위한 특별한 메시지는 보이지 않는다. 도리어 보통사람의 고통과 애환을 더 잘 보다듣기 위한 소외자를 위한 복지정책을 통해 여성, 소수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 노력하는 정책으로 더욱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다시 말해 세 번째 찾아온 보수우익계열 정당들의 집권기간 동안 사회적 안정,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제도의 유지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와 같이 보수정당의 집권기간에도 복지제도의 골격과 내용은 유지하면서 혜택의 범위만을 조금씩 조정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2006년과 2010년 기간 동안의 실질적 정책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의 표를 보자.

아래의 표는 우익정당들의 최근 2006년 선거 이후 2010년까지 진행된 복지제도의 개혁내용을 대비해 보여준다. 2006년 이전 사민당 집권 기간 동안 시행되고 있던 복지제도와 우익정권기간동안 추진된 개혁의 내용을 담고 있다. 비교를 통해 보면, 실업수당의 봉급 대체율은 80%에서 75퍼센트로 낮아졌고, 재

취업교육제도는 조직의 슬림화, 전문화, 지방분권화를 통해 국영직업소개소의 서비스 기능을 대폭 강화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병가판정이 사민당 집권 기간 동안에는 지역병원의사의 소견이 최종 판단기준이었으나, 2006년 개혁 이후에는 지역병원의사의 소견서를 보험국에서 고용한 의사에게 최종결정권을 주어 지역의사의 지역민과의 안면과 선심성 의사소견서 작성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따라서 보험국에서 제공하는 보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외상 및 심한 병이 아닌 경우 병가를 받을 수가 없어 웬만해서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엄격하게 운용하고 있다. 너무 엄격한 잣대로 의료보험제를 실시하자, 개혁이전에는 간단한 증상으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혁 이후 매우 까다로워 졌으며,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3개월 내에 재활교육을 통해 직장 재복귀를 하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 직장 내 다른 역할을 통해 직장을 복귀하던지의 두 가지 선택권을 권고받게 된다. 두 가지 모두 불가능할 경우 재교육을 통해 다른 직장을 알선 받아 근무할 수 있도록 국가직업소개소의 관리체제로 들어가게 된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병가자의 재활프로그램을 통한 직장복귀의 가능성을 배가시키기 위해 재활기관의 의사, 물리치료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도록 하고, 3개월 이내 재복귀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책임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같은 병가자의 의료보험수혜 판정여부, 재활복귀를 도와주는 체계적 관리제 등을 통해 환자의 피병이나 지역의사의 선심성 판정 등을 원천으로 차단해 사회보장제도를 꼭 필요한 국민에게 제공하는 돌봄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민영화를 통한 경쟁화, 약국의 민영화를 통한 의약품 가격인하 유도, 치과의료의 상한제를 통한 개혁과 보조금제를 실시 치아건강이 계층간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주력하고 있다.

〈표 20〉 2006-2010년 우익연립정권 기간 동안의 복지제도와 관련된 변화내용

	2006년 이전 사민당 집권기간	2006-2010년 우익정권 기간 동안의 변화
실업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급의 80퍼센트를 실업 후 최고 1년까지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급의 75퍼센트를 실업 후 1년까지 보장
재취업 교육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영직업소개소의 직업알선 및 재교육프로그램의 재량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노동시장위원회 폐지 및 국가직업소개소(AF)의 조직구성의 슬림화, 전문화 • 맞춤 코우치제 시행
병가판정 및 재활프로그램 의료보험 수혜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의사의 진단이 결정적 영향 • 지역 병원의사의 진단에 따른 의료보험 수혜 여부 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병원의사는 적극적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3개월내 재 복귀 책임 • 지역의사의 소견서를 재심사하는 의료보험국 의사의 최종판결권 도입 • 최장 3개월 이내 재활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직장재복귀의 권장
모럴헤저드의 차단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의사의 판단에 따른 재활진행과 직장복귀 능력의 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가자 노동능력평가의 전문화, 세밀화, 정확화
기초의료기관의 경쟁도입과 민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의료기관의 지방자치단체 란스팅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민영화 진행 • 종합병원의 민영화 진행
약국의 민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oteket의 독점을 파기하고 민영화를 통한 일반 마켓에서도 의약품 판매가능
치과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까지의 치료비 무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까지의 치료비무료 • 65세까지 300크로네 무상지급 • 65세이후 600크로네 무상지급 • 치아치료비 보조금 및 상한제 도입 (3000-15000 50% 보조, 15000 이상 85% 까지 보조)
국내총생산대비 세금부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8.8퍼센트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7.2퍼센트 (2008)
종합주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가치의 1.5퍼센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 6000 크로네 (실질적 인하 효과)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주도의 보편적 복지, 지방자치 책임하에 복지서비스 제공 • 사회적 약자에 관대한 보조금 • 수당지급 • 고세율의 세금을 통한 복지기금충당 • 자율적 동기부여와 책임성 강조 • 복지병의 문제와 미래재원 확보에 대한 문제 대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적 복지의 유지 • 민영화를 통한 국가역할의 축소 • 지방자치단체의 외주를 통한 복지서비스의 제공 • 질병예방과 재활프로그램의 강화 • 세금인하, 친시장, 일자리카탈출을 통한 복지기금 확충 • 취업자와 실업자간에 발생하는 사회양극화 현상의 불가피성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큰 틀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유지하지만 2006년 이후 의료개혁을 통해 개인의 선택권 확대, 모럴헤저드 문제의 해소, 질병예방과 재활활동의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외주를 통한 예산 절감 등의 노력을 기울이며 복지제도의 슬림화, 효율화를 추진 중이다. 이 같은 변화는 실업율이 7-10 퍼센트의 높은 수준에 이르는 상황에서, 일하는 사람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불가피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사민당의 지배 하에서 만연되었던 국가의존병, 복지병, 혹은 모럴헤저드를 최소화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Hall and Hartman 2009).

따라서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의 골격인 유아 및 아동복지, 노인복지, 의료복지, 각종 보조금(아동수당,

주택수당, 장애인 수당)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정당들의 복지에 대한 시각은 슬림화, 맞춤형, 경쟁을 통해 효율화를 위한 개혁의 시도로 시민당의 재집권 마스터 플랜에서도 유사한 노력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정치주도형, 혹은 정치결정론적 시각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2. 정당 지지층의 특징과 사회변화

지금까지는 정치결정론을 결정짓는 정당의 복지제도에 대한 노선과 시각을 선거공약과 시정연설의 정책방향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유권자들의 좌우 지지층이 사회계층별로 명확하게 구분되는지, 그리고 계층별 분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만약 특정 사회 지지층이 시민당과 보수당에 두껍게 포진되어 있다면 정당들은 각각의 계층별 요구에 충실한 정책으로 일관할 것이고, 계층별 정당지지도가 약하면 정책 운신폭 즉 변화의 정도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 같은 가설을 측정해 보기 위해 두 개의 자료를 활용해 보자. 첫째, 스웨덴 유권자 그룹을 두 개의 부류, 즉 노동자층과 중산층으로 나눠 자신들의 자발적인 계급소속감을 측정해서, 그들이 어떻게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정당에 대한 충성도와 압력을 측정할 수 있다. 아래의 표는 요테보리 대학 스웨덴 선거연구팀이 1956년부터 2002년까지 연속적으로 측정한 계급별 정당선호도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1957년 자발적으로 노동자층에 속한다고 답한 비율은 51퍼센트인 반면 중산층이라고 답한 사람은 49퍼센트로 나타나며, 2002년에는 35퍼센트, 65퍼센트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1956년 선거에서 노동자층에 속한다고 답한 사람 중 73퍼센트가 시민당을 지지했고, 4퍼센트는 보수당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중산층이라고 답한 사람 중 시민당을 지지한 사람은 무려 25퍼센트에 이르며, 보수당을 지지한 사람은 거의 비슷한 수준인 26퍼센트에 이른다. 1956년 선거에서 나타난 현상은 노동자층에 속한다고 답한 사람 중 시민당을 지지할 비율은 73퍼센트인 반면 보수당은 4퍼센트 밖에 이르지 않아 노동자의 귀속감이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시민당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자신이 중산층에 속한다고 한 사람 중 시민당과 보수당의 지지층은 비슷한 비율로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적어도 80년대까지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1991년 선거에서부터 커다란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1991년 선거에서는 노동자층의 귀속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의 53퍼센트만이 시민당을 지지함으로써 결속표가 이탈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1994년 잠시 약화되다가 다시 1998년, 2002년 선거에서 재현되는 모습을 보인다. 노동자 귀속감을 가진 유권자들의 보수당 지지에 있어서는 크게 변화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 같은 현상을 요약해 보면 1956년과 2002년 사이 스웨덴 사회는 시민당의 결속표가 와해되고 시민당의 약화현상이 1991년 이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확연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노동자의 두 명중 한 명 꼴로 시민당이 아닌 다른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 셈이다.

한가지 특이한 현상은 중산층의 귀속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의 경우 1956년과 2002년을 비교해 볼 때 도리어 시민당의 지지층이 늘고 있고, 보수당 지지는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시민당 지지층은 8퍼센트 상승하였고 보수층은 같은 기간 동안 9퍼센트 하락하고 있다. 이를 두고 보면 그만큼 계급 귀속도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표 21〉 스웨덴 유권자들의 계급별 사민당과 보수당에 대한 지지도변화(1956-2002)

	사민당	보수당	전체유권자
노동자층			
1956	73	4	51
1960	78	3	50
1964	73	3	49
1968	74	3	47
1970	65	2	50
1973	68	3	48
1976	63	4	51
1979	66	7	47
1982	67	10	45
1985	64	10	43
1988	64	6	43
1991	53	13	41
1994	64	9	41
1998	53	10	39
2002	55	6	35
(2002-1956)	-18	+2	-16
중산층			
1956	25	26	49
1960	26	25	50
1964	31	19	51
1968	37	18	53
1970	32	14	50
1973	29	21	52
1976	29	22	49
1979	28	31	53
1982	30	33	55
1985	30	27	57
1988	33	22	57
1991	28	28	59
1994	37	28	59
1998	30	30	61
2002	33	17	65
(2002-1952)	+8	-9	+16

주: 계급의 구분은 자발적인 계급소속감의 측정치로 이루어졌다.
 자료: Holmberg & Oscarsson, 2004: 302 쪽.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1956년 자발적으로 노동자 귀속감을 밝힌 층은 51퍼센트에 이른 반면, 중산층에 귀속된다고 밝힌 사람의 비율은 49퍼센트였으나, 이같은 현상이 점차 약화되어 2002년 선거에서는 노동자층 귀속도가 단지 35퍼센트에 그치며 역으로 65퍼센트가 중산층에 속한다고 답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권자 분석을 통해 본 스웨덴은 이제 더 이상 노동자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고 두꺼운 중산층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보면 정확할 것이다. 따라서 사민당 지지도의 약화는 매우 예견된 상황이었으며, 이같은 사회적 변화에서 정당들의 정책은 좌우 스펙트럼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들의 넓은 정책 선택폭으로 인해 정당들의 운신의 폭은 넓어진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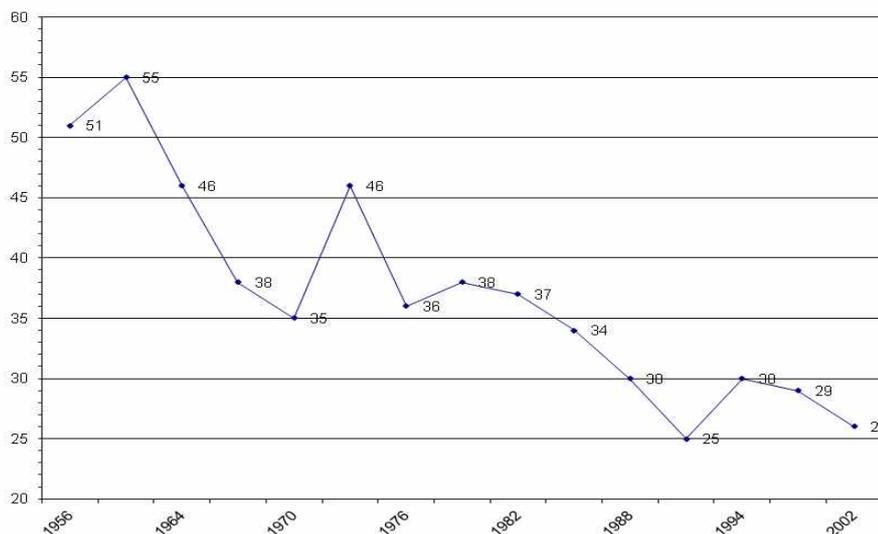
스웨덴이 이제 중산층이 두꺼워져서 사회적 소외자 혹은 약자만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든지, 극소수

최고위 중산층만을 위한 정당은 이제 더 이상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고 두꺼운 중산층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제시해야 가능하다는 점은 그만큼 복지제도의 논의에 있어서 좌우의 경계를 넘어 이제는 정책포말화(Catch-all politization)가 중요한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이같은 현상은 좌우계급투표의 지표중의 하나인 알포드 지수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알포드 지수는 직업구분으로 본 노동자계급과 비노동자 계급간의 지지정당의 편차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산업노동자 그룹이 좌익계열정당 지지율과 우익계열 정당 지지율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즉 정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지수가 폭넓게 사용되어 이유로 계급투표의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수산출 용이성과 간편성으로 인해 널리 사용되어온 지수이다. 이 지수에 따르면 스웨덴의 노동자 직종에 있는 유권자가 좌익계열과 우익계열정당의 지지도의 차이가 1952년에는 친좌익에 치우쳤는데 이 같은 현상은 73년 선거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모양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노동자계층의 좌익지지층은 와해되고 우익정당에도 지지를 보내는 좌우교차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 같은 현상은 이미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스웨덴 유권자가 이제 더 이상 좌와 우의 정책스펙트럼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운스(Anthony Downs)의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개인의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 시켜줄 수 있는 정당에게 한 표를 던지는 현상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공공선택이론이 설명하고 있는 또 다른 현상은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정당의 인지는 매년 선거 때마다 바뀌며 정당귀속감 (Party Identification)이나 계급귀속감(Class Identification)은 더 이상 중요치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를 참조. 따라서 스웨덴의 유권자가 알포드지수의 변화를 보더라도 이 같은 지적은 어느 정도 설명력을 지니며 선거의 결과는 유권자들의 정책평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6] 알포드지수 (Alford Index)의 변화 (1956-2002)



자료: Holmberg & Oscarsson, 2004: 55 쪽.

이를 종합해 보면 정치적 동인이 사회적 동인을 앞서가고 있는 듯 하다. 즉 사민당의 44년 집권 기간 동안 이룩해 놓은 보편적 복지제도가 우익정당들이 정권을 장악하더라도 국민이 폭넓게 지지하고 있는 복지제도에 대한 기대 때문에 개혁을 통해 대폭 개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스웨덴 유권자의 변화는 계층에 따른 정당지지도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과,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복지정책에 있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정책을 선호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개인이익의 극대화가 분배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보편적 복지제도를 통한 사회의 통합, 사회안정 그리고 평등구조의 순기능화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스웨덴 유권자들이 좌우로부터 이탈해 자유롭게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보편적 복지를 지탱하는 고세금에 대한 지지도가 아직 약화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적 동인과 사회적 동인의 동시성이 아마도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를 유지하는 힘이 아닌가 여겨진다.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보편적 복지제도의 유지를 위해서는 높은 소득세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복지제도의 유지 혹은 확대를 위해 아직도 세금인상에 폭넓게 동의할 정도로 복지제도에 대한 지지와 충성도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정당들은 보편적 복지의 순기능과 함께 국민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유지를 원한다고 할 수 있다(Pierre & Rothstein 2003: 7쪽 Nilsson 1997).

제5절 스웨덴 복지제도의 도전과 전망

지금까지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를 지탱하는 두 가지 축, 정당의 보편적 복지의 유지에 대한 폭넓은 동의, 그리고 유권자들의 높은 세금에 대한 지속적 지지를 바탕으로 사회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논의를 중심으로 다루어 보았다. 이 장에서는 스웨덴이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과 앞으로 스웨덴 복지제도의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이동할 것인지, 그 정책대안은 무엇일 것인지에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해 보기로 한다.

1. 스웨덴 복지제도의 도전

현재 스웨덴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구분해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내생적 도전이다. 사회구조적으로 노령화와 저출산율에 직면하면서 장기적으로 산업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며, 보편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아직까지 스웨덴 노동인구 중 산업종사율이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높아 아직까지 산업경쟁력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노동인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표 22〉 전체 노동인구 중 산업종사비율 (15-64세)

연도	스웨덴	EU-27
2005	72,5	63,5
2006	73,1	64,5
2007	74,2	65,4
2008	74,3	65,9
2009	72,2	64,6

출처: Eurostat

아래 표에서 보듯 스웨덴의 노동인구는 1970년대에 이미 74.2퍼센트의 높은 수준에 올라 2009년의 비교치와도 차이가 나지 않지만 51년 후인 2060년에는 급격히 줄어 70.3퍼센트의 노동인구만이 노동시장에 참여를 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복지제도의 가장 큰 부담은 무엇보다도 노인인구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1970년에 5퍼센트에 머물러 있었던 7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9년에 8.5퍼센트를 기록하고 있고 2060년에는 13.5퍼센트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따라 노동연령이 16-65세에서 15-75퍼센트로 변경한 이후의 통계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던 65세 정년인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25퍼센트 이상을 상회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 노동인구가 경제성장을 통해 복지제도를 견인할만큼 증가하지 못한다면 늘어난 노인인구층의 복지비용의 증가, 즉 100세시대에 늘어날 건강 및 의료비용, 연금, 주택난 해소를 위한 노인시설 확충 등의 노인복지에 소요되는 복지비용의 부담증가가 불을 보듯 훤히 상 황이다.

〈표 23〉 인구변화추이 (1970-2060)

	1970	2009	2060
0-14 세	20,8	16,6	16,2
15-74 세	74,2	74,9	70,3
+75 세	5,0	8,5	13,5

자료: SCB (스웨덴 통계청)

http://www.scb.se/Pages/Product_25785.aspx

이와 함께 또 다른 대내적 도전용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여성 출산율이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 스웨덴의 여성출산율은 1999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이후 상승곡선을 그려 현재 1.85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 아일랜드 등 전통적인 카톨릭 국가를 제외한 다른 유럽국가에 비교해 상위 그룹에 속해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은 여성의 출산기피현상을 출산휴가제, 공영탁아소를 통한 육아, 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 자녀수당, 무상교육 등의 복지서비스를 통해 완화시켜 주기 때문이다. 이같은 주장이 상당한 설명력을 얻고 있는 이유는 매우 유사한 여성, 가족, 아동복지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아이슬랜드(2.08), 노르웨이(1.90), 핀란드(1.84), 덴마크(1.83)등 이웃 북유럽국가들이 모두 출산율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스웨덴의 여성출산율이 일단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복지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상황속에서 결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앞으로 점차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노동인구의 감소는 역으로 이 같은 보편적 복지제도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복지의 축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여성의 출산율도 감소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높은 노인인구증가율과 100세 시대에 파생되는 노인복지의 문제, 그리고 낮은 여성출산율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며 미래 복지제도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1960-70년대 기간동안 경제성장에 필요한 노동인력의 수급을 위해 그리스, 이태리 등의 남유럽국가에서 노동이민을 받아들였던 경험이 있는 스웨덴이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2009년 1월부터 부족한 전문인력의 초빙을 통한 노동이민제의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고, 앞으로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iksdag & Departement 2008 DN 2010).

〈표 24〉 유럽 출산율비교(1996-2006)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Belgium	1.59	1.60	:	:	:	:	:	:	:	:	:
Bulgaria	1.23	1.09	1.11	1.23	1.26	1.20	1.21	1.23	1.29	1.31	1.37
Czech Republic	1.18	1.17	1.16	1.13	1.14	1.14	1.17	1.18	1.22	1.28	1.33
Denmark	1.75	1.76	1.73	1.75	1.78	1.76	1.72	1.76	1.78	1.80	1.83
Germany	1.32	1.37	1.36	1.36	1.38	1.35	1.34	1.34	1.36	1.34	1.32
Estonia	1.37	1.32	1.28	1.32	1.39	1.34	1.37	1.37	1.47	1.50	1.55
Ireland	1.88	1.93	1.93	1.89	1.88	1.93	1.96	1.95	1.93	1.86	1.90
Greece	1.28	1.28	1.26	1.24	1.26	1.25	1.27	1.28	1.30	1.33	1.39
Spain	1.16	1.17	1.16	1.19	1.23	1.24	1.26	1.31	1.33	1.35	1.38
France	:	:	1.78	1.81	1.89	1.90	1.88	1.89	1.92	1.94	2.00
Italy	1.20	1.21	:	1.23	1.26	1.25	1.27	1.29	:	1.32	:
Cyprus	1.95	1.86	1.76	1.67	1.64	1.57	1.49	1.50	1.49	1.42	1.47
Latvia	1.18	1.14	1.12	1.19	1.24	1.21	1.23	1.29	1.24	1.31	1.35
Lithuania	1.49	1.47	1.46	1.46	1.39	1.30	1.24	1.26	1.26	1.27	1.31
Luxembourg	1.77	1.72	1.68	1.74	1.76	1.65	1.63	1.62	1.66	1.66	1.65
Hungary	1.46	1.37	1.32	1.28	1.32	1.31	1.30	1.27	1.28	1.31	1.34
Malta	:	:	:	:	:	:	:	:	:	1.38	1.41
Netherlands	1.53	1.56	1.63	1.65	1.72	1.71	1.73	1.75	1.73	1.71	1.70
Austria	1.45	1.39	1.37	1.34	1.36	1.33	1.39	1.38	1.42	1.41	1.40
Poland	1.59	1.52	1.44	1.37	1.35	1.32	1.25	1.22	1.23	1.24	1.27
Portugal	1.44	1.47	1.47	1.50	1.55	1.45	1.47	1.44	1.40	1.40	1.35
Romania	1.37	1.40	1.40	1.39	1.39	1.31	1.26	1.27	1.29	1.32	1.31
Slovenia	1.28	1.25	1.23	1.21	1.26	1.21	1.21	1.20	1.25	1.26	1.31
Slovakia	1.47	1.43	1.37	1.33	1.29	1.20	1.18	1.20	1.24	1.25	1.24
Finland	1.76	1.75	1.70	1.74	1.73	1.73	1.72	1.77	1.80	1.80	1.84
Sweden	1.60	1.52	1.50	1.50	1.54	1.57	1.65	1.71	1.75	1.77	1.85
United Kingdom	1.73	1.72	1.71	1.68	1.64	1.63	1.64	1.71	1.77	1.78	1.84
Croatia	:	:	:	:	1.47	1.38	:	1.32	1.34	1.41	1.38
FYR of Macedonia	2.07	1.93	1.90	1.76	1.88	1.73	1.80	1.77	1.52	1.46	1.46
Iceland	2.12	2.04	2.05	1.99	2.08	1.95	1.93	1.99	2.04	2.05	2.08
Liechtenstein	:	:	:	:	1.57	1.52	1.47	1.37	1.44	1.49	1.42
Norway	1.89	1.86	1.81	1.84	1.85	1.78	1.75	1.80	1.83	1.84	1.90
Switzerland	1.50	1.48	1.47	1.48	1.50	1.38	1.39	1.39	1.42	1.42	1.43

출처: Eurostat.

두 번째 도전은 외생적 요인이다. 세계화의 문제는 스웨덴의 산업시설이 점차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국가로 이동할 가능성 있기 때문에 심각성이 더하다. 스웨덴 통계청과 노동시장위원회에서 조사한 2002년과 2004년의 2년간 중국, 폴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등 노동력이 저렴한 아시아 및 동유럽국가로 생산시설이 이전해서 발생한 실업율은 전체의 0.23퍼센트에 해당하는 1700건이 신고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여 스웨덴의 실업율은 6-7퍼센트 수준에서 고착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Lennartsson & Lindholm, 2006:55쪽). 스웨덴의 경제는 2003년 기준 이미 다국적 기업이 42퍼센트를 차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산업 엑소더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표 25〉 기업이전사례 (2002-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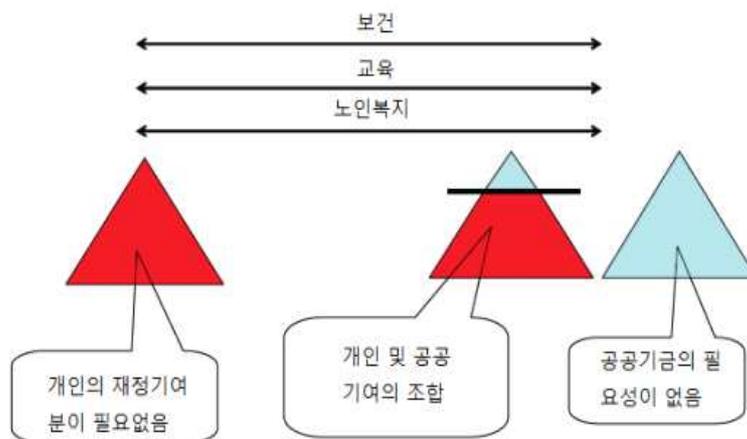
	2003년 기준 산업종사자	2002년-2004년 사이 외국이전 기업분포율
외국소유 다국적 기업	42	67
스웨덴 소유 다국적 기업	37	28
스웨덴 기업	21	6
	100	100

자료: Lennartsson & Lindholm. 2006. Utflytning av produktion (생산시설의 이전). 68쪽.
http://www.scb.se/Statistik/AM/AM9903/_dokument/32.pdf

2.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본 복지전략: 복지서비스의 요구와 자원의 상관관계

결국 스웨덴이 복지정책의 논의는 다음의 세가지로 좁혀진다. 첫째, 개인의 재정기여가 전혀 필요치 않은 공공기금, 즉 국민과 기업의 세금으로 충당할 것인지, 둘째, 개인 및 공공기여의 조절을 통한 순응 과정을 거칠 것인지, 세 번째, 공공기금이 필요하지 않은 개인의 기여금만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선택사항으로 보인다. 이를 도식화해 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즉 가장 왼쪽 편에는 완전한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복지제도의 운영체제이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대안은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 개인책임을 극대화하는 모델이고, 중앙에 있는 대안이 개인 및 공공기여의 적절한 조화를 통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그림 7] 미래복지모델의 재정적 수급 모델



자료: SOU 2009:1, 90쪽

이를 보편적 복지를 운용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내생적, 외생적 변화에 대한 압력과 상황에 따라 어떤 대안이 적절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선택을 보여준다. 현재 스웨덴의 복지모델은 개인의 재정기여분이 극히 적게 들어가고 공공세금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으나, 1999년 연금개혁, 각종 복지요금의 인상

(예를 들어 기초의료 진료비 인상, 의료비 상한금 인상, 탄소요금 인상 등) 개인기여금의 비율이 조금씩 늘어가는 상황에 있다. 앞으로 미래복지 모델은 재정수급에 있어 개인기여금과 공공세금의 비율을 어떻게 배합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국민이 개인 책임의 극대화를 통해 복지를 개인의 선택과 책임으로 귀속하게 될 경우, 점차 우향화 되어 가겠으나, 국민의 보편적 복지의 공공성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상황 속에서는 급진적인 변화가 예상되지는 않는다.

이를 도표로 다시 서술해 보면 앞으로 스웨덴 복지정책결정자들에게는 세가지 선택적 대안이 있는데, 첫째, 현상유지, 둘째, 체제전환전략, 셋째, 순차적 적응 등을 들 수 있다. 현상유지 전략은 순수한 공공 복지모델이고, 두 번째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버리고 선택적 복지로 배를 갈아타는 상황, 마지막으로 순차적으로 개인과 공공책임을 적당히 섞어가면서 적응해 가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그림으로 지적한 가운데 모델이 황으로 움직이면서 적절히 개인책임과 공공성을 배합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책결정자, 혹은 정당정책 담당자들은 국민에게 선거절차를 통해 적절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진다든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전략이다. 스웨덴이 앞으로 취할 수 있는 정책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모델이다.

〈표 26〉 스웨덴 복지정책결정자들의 정책대안

정치적 선택전략	내용
현상유지 전략 (Maintain status quo)	사회적, 국제적 변화의 무시와 현 정책의 유지고수. 전통적 복지국가레짐의 국가제도의 현상유지.
체제전환전략 (System shift)	구조적 변화요구에 대한 적극적 수용을 통한 일괄적 체제변환. 국가제도에 대한 전반적 개혁. 예를 들어 보편적 복지에 대한 폐지와 선택적 복지의 도입.
순차적 적응 (Gradual adaptation)	변화된 상황과 요구에 따른 순차적 제도개혁. 대폭적 세금인하 등의 요구를 설득하면서 개인의 사회책임과 연대적 사고를 유지함.

자료: Bergh, 240 쪽.

제6절 나오는 글

한국에서 보편적 복지나 선택적 복지냐를 놓고 논의가 분분하다. 과연 한국의 복지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스웨덴은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다루며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스웨덴 복지모델의 핵심인 평등성은 과연 한국사회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을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보편적 복지가 평등성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은 앞서서도 논했지만, 우선 보편적 복지제도를 시도해 보기에는 국민의 세금저항이 만만치 않은 한국적 상황에서 과연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다. 스웨덴복지모델은 2차 대전 이후의 경제발전과 성장의 열매를 고세울, 고복지로 표현되는 복지제도를 통한 개인간, 사회계층간, 지역간 격차 줄이기를 통해 평등사회를 이루어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만큼 단기간에는 효과를 보기 힘들고 적어도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해안이 있어야 가능한 국가개조 산업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하리라 본다.

둘째, 스웨덴 경제성장의 모델은 결국 완전고용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고용정책과 직결되어

있고, 여성의 경제생산에의 참여와 성인 남녀의 노동시장 진출에 따른 가족복지의 보전, 노동과 연계된 불이익의 제거 등의 노력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한국이 복지제도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참여가 필수적이고, 이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가족복지, 아동복지, 방과후 프로그램, 아동병상치료 연계 부모휴가제 등을 과감히 수용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의 복지예산을 확충해 서서히 늘릴 필요가 있다. 여성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시급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셋째, 스웨덴복지의 최종 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인 국민 곁에 있는 기초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있다.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나, 스웨덴도 지방자립도를 이루는 곳은 고작 스톡홀름과 요테보리 등의 대도시만을 제외하고, 지방교부금과 로빈훅세를 통해 복지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행정개편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기초단체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재정능력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 집행능력, 감독능력 등이 고루 갖추어져 있어야 가능한 제도이다. 스웨덴의 경우에 있어서도 1971년 행정개혁을 거쳐 290개의 기초자치단체로 통폐합한 이후 국가 및 정당차원에서 복지행정, 교육행정, 의료행정 등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과전 교육을 단행하는 등 능력배가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의 경우 아직 중앙이 예산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수동적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행정개혁을 통한 복지제도 개선, 세제의 개편, 행정능력 배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복지의 확대가 당장은 재원이 많이 들고, 세금이 많이 들어가지만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 사회의 안정성, 균형적 발전, 공정한 사회로 진입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복지논쟁에서 수혜자, 피해자로 구분해 생각하는 2분 법적 논리보다는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장기적 안목을 가져야 하리라 본다. 한국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 지역격차가 더욱 커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 상황에서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틀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예산의 운용능력 내에서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업의 복지에 대한 책임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가 7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기업사회보장제, 혹은 고용세(Employer's Tax)의 기여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 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기업들, 특히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일시적 세금환원 등으로 국민환심사가 아닌, 한국복지의 한 축을 떠받치는 책임성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스웨덴 기업들이 법인세와는 별도로 고용세를 통해 복지기금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경쟁력이 있을지 의문하는 경우가 많으나, 앞서서도 지적한 복지제도의 순기능, 무상 교육제도도 중요한 수단이지만, 이들과 함께 구조조정분담을 재원으로 사용해 실업자의 재취업교육 등을 통한 산업재배치 기능이 있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으로 인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과 국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Win-Win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여섯째, 지속적 경제발전은 스웨덴복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2000년대 이후 재정위기 상황 속에서도 OECD 평균치 보다 1.2퍼센트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경제성장이 복지의 중요한 재원이 되어 왔음은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다. 현재 스웨덴의 경제성장은 더 이상 제조산업에 있지 않고, 서비스산업, 지식산업, 녹색산업, 에너지산업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와 더불어 복지와 연관된 서비스산업을 핵심 미래 산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복지서비스 산업을 제외하고 한국과 비슷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지속적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한 복지 늘리기를 고려하지 않으면 바로 복지의 역기능, 즉 빈부격차와 양극화의 심화를 통해 사회갈등과 반목에 의해 좌초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

일곱째, 스웨덴은 좌우공조를 통한 복지제도의 구축이 가능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선택은 결국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나, 좌우 정당들의 협조 없이는 예산배분을 놓고 침예한 대립을 피할 수 없다. 결국 국민동의를 이끌어 낼 수 없는 국가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좌우정당 들의 대 타협과 협의정치를 통해 국민의 동의를 통해 추진해야 하리라 본다.

여덟째, 스웨덴의 경우 고령화, 저출산, 청년실업 등 내생적 변수와, 세계화의 파고 속에서 산업엑소더스를 통한 산업공동화, 세계경제발전의 둔화에 따른 실업율의 상승 등이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한국의 문제도 이와 유사하거나 더욱 심각한 상황에 있으므로, 복지제도는 지속적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리라 본다. 복지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경우 고정 복지부담금은 단기間に 줄일 수 없는 난점이 있어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순식간이기 때문에 경제신인도가 떨어져 IMF의 구제금융 신세를 지고 있는 그리스, 아일랜드의 실패를 교훈 삼을 필요가 있다. 복지와 경제의 지속적 발전은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함께 가는 것이지 한쪽에 공기기 빠지면 달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단행본 및 연구논문

- AF Rapport. 2010. Marknadsrapport. Arbetsförmedlingen.
- Anderson, Karen M. 2001. 'The Politics of Retrenchment in a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 Reform of Swedish Pensions and Unemployment Insuranc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4:9. 1063 -91.
- Arter, David. 2009. *Scandinavian Politics Today*.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Aspling, Sven. 1989. 100 År i Sverige. Vägen till Folkhemmet (스웨덴의 100년. 국민의 집 구축의 과정). Stockholm: Tiden.
- Benner, Mats. 1997. *The Politics of Growth. Economic Regulation in Sweden 1930-1994*. Stockholm: Arkiv förlag.
- Benner, Mats, and Torben Bundgaard Vad. 2000. 'Sweden and Denmark: Defending the Welfare State', in Fritz W. Scharpf and Vivian A. Schmidt (eds.), *Work and Welfare in the Open Econom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399 -466.
- Bergh, Andreas. 2008. 'Explaining the Survival of the Swedish Welfare State: Maintaining Political Support Through Incremental Change'. *Financial Theory and Practice*, 32 (3) 233-254.
- Bergqvist, Christina (Editor in chief) et al. 1999. *Equal Democracies: Gender and Politics in the Nordic Countries*. Oslo: Scandinavian University Press.
- Bonoli, Giuliano, and Bruno Palier. 2001. 'How do Welfare States Change? Institutions and their Impact on the Politics of Welfare State Reform in Western Europe', in Stephan Leibfried (ed.), *Welfare State Futur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57 - 76.
- Carlsson, Ingvar. 2003. *Så tänkte jag (이렇게 생각했다)*. Stockholm: Jalmarsson & Högberg.

- Childs, Marquis. 1936. Sweden: The Middle Way. London: Faber & Faber.
- Childs, Marquis. 1980. Sweden: The Middle Way on Trial.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CT and London.
- Classon, Sigvard. 1988. Kampen för tryggheten (안정된 삶을 위한 투쟁). Stockholm: Boréa.
- Clement, Wallace and Mahon, Rianne. 1994. Swedish Social Democracy. A Model in Transition. Toronto: Canadian Scholars' Press.
- Dahlberg, Hans. 1999. Hundra år i Sverige (스웨덴 100년사). Stockholm: Bonniers.
- DN 2011-1-11. Fortsatt Robinhood Skatt. 로빈훗 세금을 앞으로도 지속된다.
-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 Einhorn, Eric S. and Logue, John. 1989. Modern Welfare States. Politics and Policies in Social Democratic Scandinavia. New York: Praeger.
- Erixon, L., 1998. 'The Golden Age of the Swedish Model: Coherence between Capital Accumulation and Economic Policy in Sweden in the Early Post War Period'.
- Esping-Andersen, Gøsta. 1985. Politics against Markets. The Social Democratic Road to Power.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sping-Andersen, Gøsta. 1990.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sping-Andersen, Gøsta. 1992 'The Making of a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in Misgeld, Klaus, Karl Molin and Klas Åmark. eds. Creating Social Democracy. A Century of the Social Democratic Labor Party in Sweden. Pennsylvania: Pennsylvania University Press.
- Esping-Andersen, Gøsta. ed. 1996. Welfare States in Transition. National adaptations in global economies. London: Sage.
- Fredriksson, Bert and Gunnmo, Alf. 1985. Våra fackliga organisationer (우리의 노동조합). Stockholm: Rabén & Sjögren.
- Feldt, Kjell-Olof. 1991. Alla dessa dagar: I regeringen 1982-1990 (지난 모든 시간들: 1982-1990 집권기간). Stockholm: Norstedts.
- Freeman, Samuel. 2007. Rawls. New York: Routledge.
- Fries, Björn. 'S, nu sparkar vi ut småpåvarna'. Expressen. <http://www.expressen.se/debatt/1.2159215/s-nu-sparkar-vi-ut-smapavarna>. 2010-10-03.
- Glyn, Andrew. ed. 2003. Social Democracy in Neoliberal Times. The Left and Economic

- Policy since 198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ustafsson, Agne. 1980. Kommun och Landsting idag (کمۇن과 란스팅의 오늘). Malmö: Liber.
- Hall, Caroline and Laura Hartman. 2009. "Moral hazard among the sick and unemployed: Evidence from a Swedish social insurance reform." *Empirical Economics*, 39(1): 27-50.
- Halvarson, Arne, Kjell Lundmark and Ulf Staberg. 1995. Sveriges statskick (스웨덴의 통치 체제). Stockholm: Almqvist & Wiksell.
- Hamilton, Carl B. 2000. 'Hemliga pengar till partier bör bestraffas', Svenska Dagbladet, March 6.
- Hansson, Carl-Gösta. 1996. Fackliga Karriärer. (노조활동). Stockholm: Boréa.
- Holmberg, Sören and Henrik Oscarsson. 2004. Väljare: svenskt väljarbeteende under 50 år. (유권자: 스웨덴 유권자 행태 50년사). Stockholm: Norstedts.
- Huber, Evelyne and Stehpnos, John D. 2001. Development and Crisis of the Welfare State. Parties and Policies in Global Market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Johanssonan, Per and Mårten Palme. 2005. "Moral hazard and sickness insurance." *Journal of Public Economis*, 89: 1879-1890.
- Johnson, A. 1998. Om LO, pengarna och politiken (노조 정치자금 정치). Timbro.
- Khan, Jahangir and Clas Rehnberg. 2009. "Perceived job security and sickness absence: A study on moral hazard." *European Journal of Health Economics*, 10: 421 - 428.
- Karvonen, Lauri and Jan Sundberg, eds. 1991. Social Democracy in Transition: Northern, Southn and Eastern Europe. Aldershot: Dartmouth.
- Klitgaard, Michael Baggesen. 2007. "Why are they doing it? Social democracy and market-oriented welfare state reforms." *West European Politics*, 30: 172-194.
- Korpi, Walter. 1994. "Sammanhålling och intressepolitik", in Thullberg, Per and Kjell östberg, Den svenska modellen. Lund: Studentlitteratur.
- Lane, Jan-Erik. 1991. "Interpretatoin of the Swedish Model", *West European Politics*, 14, 3, 1-8.
- Larsson, Laura. 2002. "Sick of being unemployed? Interactions between unemployment and sickness insurance in Sweden". Stockholm: IFAU - Institute for Labour Market Policy Evaluation: WORKING PAPER 2002:6.

- Lennartsson, Daniel & Pär Lindholm. 2006. Utflyttning av produktion (생산시설의 이전).
http://www.scb.se/Statistik/AM/AM9903/_dokument/32.pdf
- Lewin, Leif. 1988. Ideologi och strategi. Svensk politik under 100 år (사상과 전략. 스웨덴의 최근 100년 정치사). Stockholm: Norstedts.
- Lijphart, Arend. 1969. Politics in Europe.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NJ.
- Marshall, T. H. 1950.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and other essays" Cambridge: CUP.
- Marshall, T.H. 1964. Class, Citizenship and Social Development. Garden City, NY: Doubleday.
- Misgeld, Klaus, Karl Molin and Klas Åmark. eds. 1992. Creating Social Democracy. A Century of the Social Democratic Labor Party in Sweden. Pennsylvania: Pennsylvania University Press.
- Moschonas, Gerassimos. 2002. In the Name of Social Democracy. The Great Transformation: 1945 to the Present. London: Verso.
- Möller, Tommy. 2004. Svenska politisk historia 1809-1975. (스웨덴 정치사 1809-1975). Stockholm: Boréa.
- Nilsson, Lennart. 1997. "The fall and rise of support for the public sector", in Holmberg and Weibull, Trends in Swedish Opinion. Göteborg: The SOM Institute, Göteborg University.
- Norborg, Lars-Arne. 1999, Sveriges historia under 1800- och 1900-tiden. Svensk samhällsutveckling 1800-1998 (1800년대와 1900년의 스웨덴 역사. 스웨덴 사회발전을 중심으로). Stockholm: Almqvist & Wiksell.
- Persson, Göran. 1997. Den som är satt i skud är icke fri (국가부채와 구속). Stockholm: Atlas.
- Petersson, Olof. 2000. Svensk politik. Stockholm: Norstedts.
- Pierre, Jon and Bo Rothstein. eds. 2003. Välfärdsstat i otakt (복지제도의 불협화음). Malmö: Liber.
- Rawls, John. 1971.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Regeringsproposition 1978/1979:61.
- Renstig, Monica, Fölster, Stefan, Morin, Anders and Hallström, Morin. Den sjuka vården (병든 의료기관). Ekerlids Förlag 2003.
- Riksrevisionen. 2006. "Den offentliga arbetsförmedlingen". Stockholm: Riksrevisionen.

- Riksrevisionen. 2006. "Den offentliga arbetsförmedlingen". Stockholm: Riksrevisionen. 부록.
- Rothstein, Bo. 1986. Den socialdemokratiska staten. Reformen och förvaltning inom svensk arbetsmarknads- och skolpolitik (사민주의국가론. 노동시장정책과 교육정책에 있어서의 개혁과 행정). Stockholm: Boréa.
- Rothstein, Bo. 1994. Vad bör staten göra? Om välfärdsstatens moraliska och politiska logik (국가의 역할: 복지국가의 도덕적 정치적 논리). Stockholm: SNS förlag.
- Rothstein, Bo. 1996. The Social Democratic State. The Swedish Model and the Bureaucratic Problem of Social Reforms.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Schmitter, Phillippe C. 1974. "Still the century of corporatism?" Review of Politics (January).
- Shalev, Michael. 1983. 'The Social Democratic Model and Beyond: Two Generations of Comparative Research on the Welfare State', Comparative Social Research, 6, 87 - 148.
- Skedinger, Per and Martin Lundin. 2000. "Decentralisation of Active Labour Market Policy: The Case of Swedish Local Employment Service Committees", IFAU - Institute for Labour Market Policy Evaluation: Working Paper Series 2000:6.
- Skogman Thoursie, Peter. 2004. "Reporting sick: Are sporting events contagious?" Journal of Applied Economics, 19: 809-823.
- SOU 2009:1, Den Långsiktiga Finansieringen - Välfärdspolitikens klimatfråga (장기 재정수급에 관한 연구: 복지제도의 환경)
- Starrin, Bengt and Svensson, Ronny. 1998. Sverige efter välfärdskrisen mellan hot och hopp (복지위기 이후의 스웨덴. 위협과 희망사이에서). Stockholm: Boréa.
- Statskontoret(국가행정위원회). 2009. Begreppet och beräkningssätt inom kostnadutjämnigen: En metodstudie (균형분배기금의 용어와 산출법: 방법론). Stockholm. 2009:9.
- Svallfors, Stefan. 1996. Välfärdsstatens moraliska ekonomi. Välfärdsopinionen i 90-talets Sverige (복지국가의 도덕적 경제. 90년대 스웨덴 복지여론). Stockholm: Boréa.
- Svallfors, Stefan. 2000. Sidospår. Essäer om klass & politik. (Sidetrack. 계급과 정치에 관한 에세이). Stockholm: Boréa.
- Svallfors, Stefan. 2004. Klassamhällets kollektiva medvetande. (계급사회의 집단의식). Stockholm: Boréa.
- Svensson, Torsten. 1994. Socialdemokratins dominans. Uppsala: Acta Universitatis

Upsaliensis.

- Therborn, Göran. 1987. 'Lycksalighetens halvö' (최고로 행복한 반도 스칸디나비아). Sekretariatet för framtidsstudier. Stockholm.
- Therborn, Göran. 1992. 'A unique chapter in the history of democracy: The Social Democratis in Sweden, in Misgeld, Molin and Åmark (eds.), Creating Social Democracy: A Century of the Social Democratic Labor Party in Sweden. Pennsylvania: Pennsylvanian State University Press.
- Thullberg, Per and Kjell östberg. red. 1994. Den svenska modellen (The Swdish Model). Lund: Studentlitteratur.
- Williams, Fiona. Social Policy: A Critical Introduction. Issues of Race, Gender and Class. Cambridge: Polity.
- Wängnerud, Lena. 1998, Politikens andra sida. Om kvinnorepresentation i Sveriges Riksdag (정치의 다른 측면. 여성의 의회내 대의성에 관하여). Göteborg: Göteborg University,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Åmark, Klas. 1994. "Den svenska arbetarrörelsens förutsättningar och strategier(Conditions and Strategy of the Swedish Labour Movement)", Thullberg, Per and Kjell östberg. red. 1994. Den svenska modellen (The Swdish Model). Lund: Studentlitteratur.
- Åmark, Klas. 2005. Hundra år av välfärdspolitik. Välfärdsstatens framväxt i Norge och Sverige. (복지정책의 100년.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 복지국가의 성장과정). Stockholm: Boréa.

인터넷 자료

- 스웨덴 지방자치 중앙협의회 예산 자료:
http://www.skl.se/web/Kostnader_och_intakter.aspx
- 스웨덴 보수당 http://www.moderat.se/material/pdffiler/moderat_11799.pdf
- 유럽통계국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eurostat/home/>
- 스웨덴 통계청 과외수당세 자료:
<http://www.skatteverket.se/privat/skatter/arbeteinkomst/vadblirskatten/marginalskatt.4.61589f801118cb2b7b280006375.html>
- 스웨덴 통계청 인구통계 자료: http://www.scb.se/Pages/Product___25785.aspx
- 노동이민제에 대한 보도: Riksdag & Departement 2008-11-28.

http://www.rod.se/politikomraden/migration_och_integration/Sverige-ater-oppet-for-arbetskraftsinvandring/

- 전문노동인력수급에 관한 보도: DN 2010-11-16

<http://www.dn.se/ekonomi/arbetsinvandring-som-blir-jobbflytt>

- 연금생활자협회와의 Haga 회의: Veteranen 2009-05-26

<http://www.veteranen.se/index.php/din-pension/1517-regeringen-moette-spf-pa-haga-slott>